2010 Financial Supervision Scholastic Symposium

Challenges facing supervision

Aditya Narain
Advisor, MCM
International Monetary Fund
Seoul, Dec 7, 2010

The G 20 financial regulation agenda…

Establishment of FSB	International Cooperation	Scope of Regulation	Assessment of Regulatory regimes
Prudential Regulation	Compensation	Non-cooperative Jurisdictions	Accounting Standards
	Credit Rating Agencies	Fair and Substantial Contribution	

....will impact the future Financial System and many questions remain to be answered...

- Will the global financial system be safer and simpler?
- What will be the role of banks versus role of nonbanks?
- Will the financial system be smaller as a proportion of the economy?
- At the global level, will financial expansion and integration continue?
- What kind of banking system will we have?
- What type of markets will we have?
- What will happen to Innovation?

…But we do know that in any case, the health of the financial sector depends on several fac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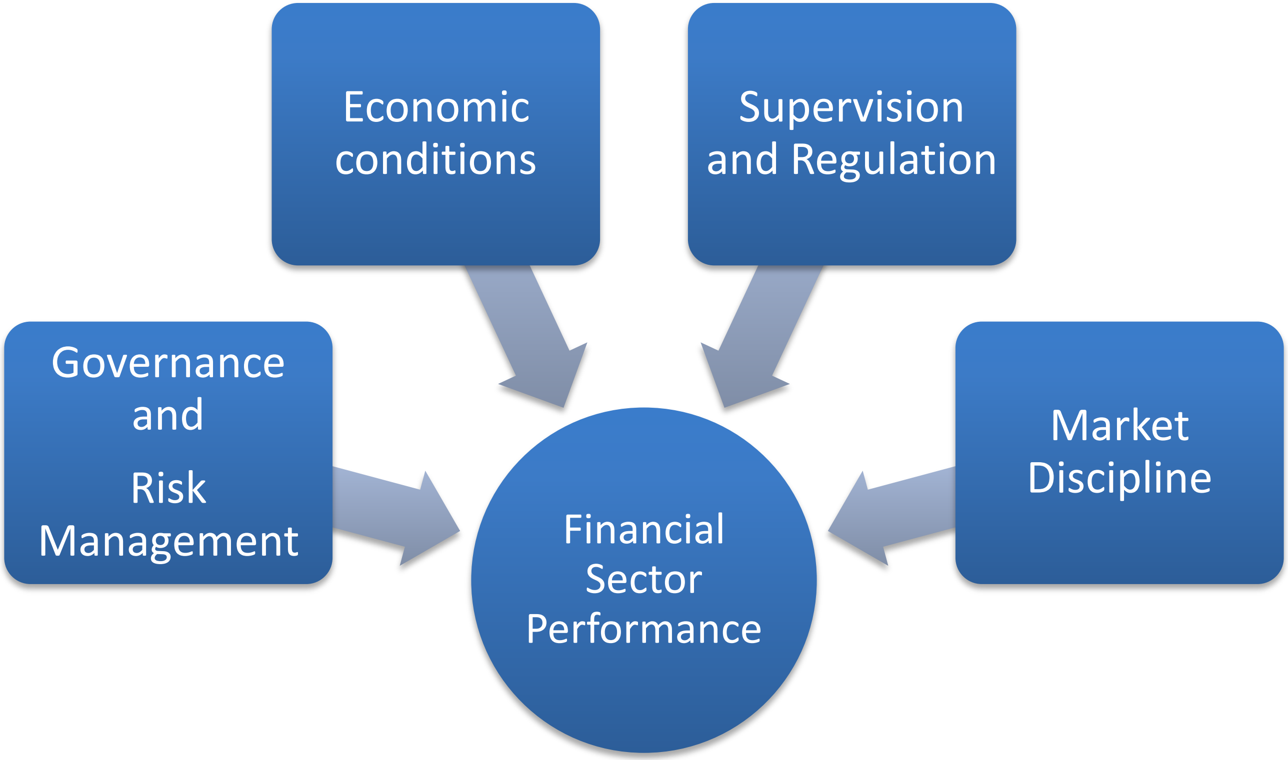

…and the Financial crisis post-mortem has initially focused mainly on enhanced regu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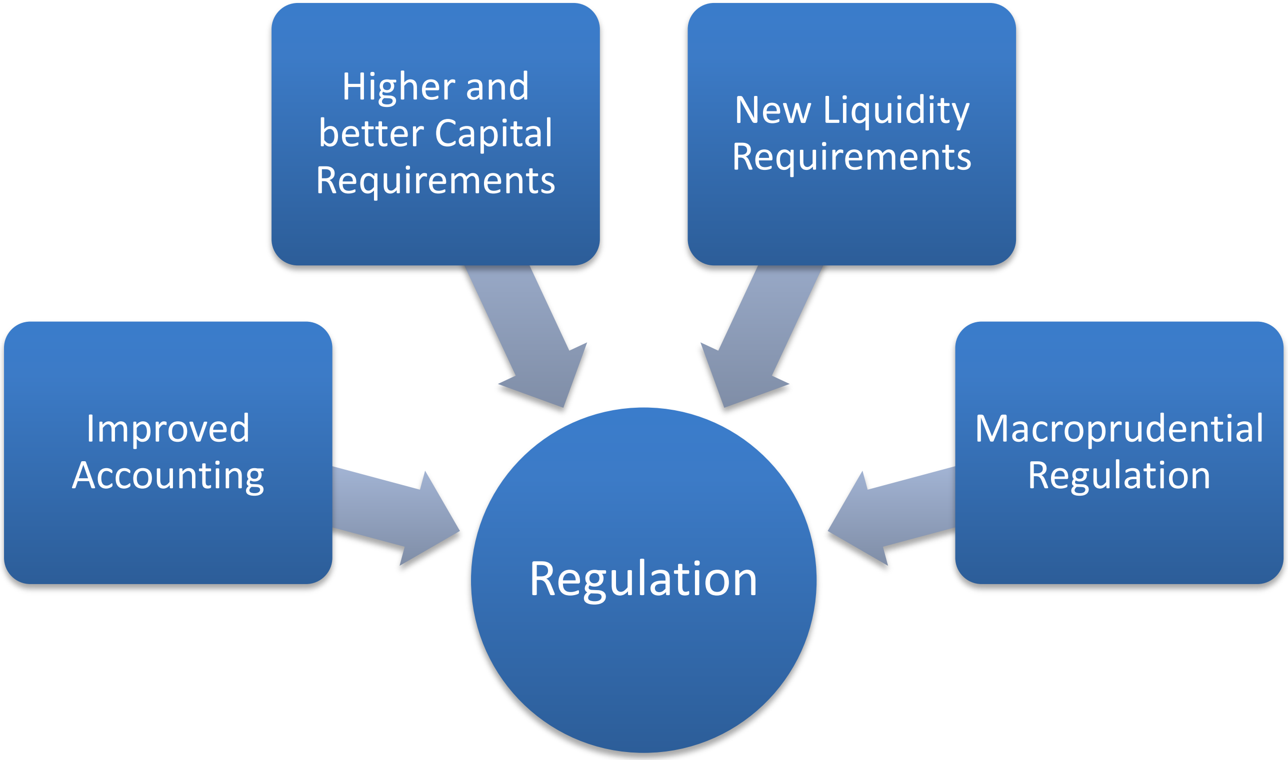

…But having good rules will not be enough to prevent such a crisis in future.

- Most countries broadly follow similar rules
- But the quality of implementation varies
- As does monitoring of implementation and follow up
- Hence the need for strong supervision

What went wrong with supervision this time ?

In some cases, supervision:

- Did not take matters to their natural conclusion
- Did not intrude sufficiently into the affairs of regulated institutions
- Was not proactive in dealing with emerging risks
- Did not adapt sufficiently to the changes in the environment

What makes for good superv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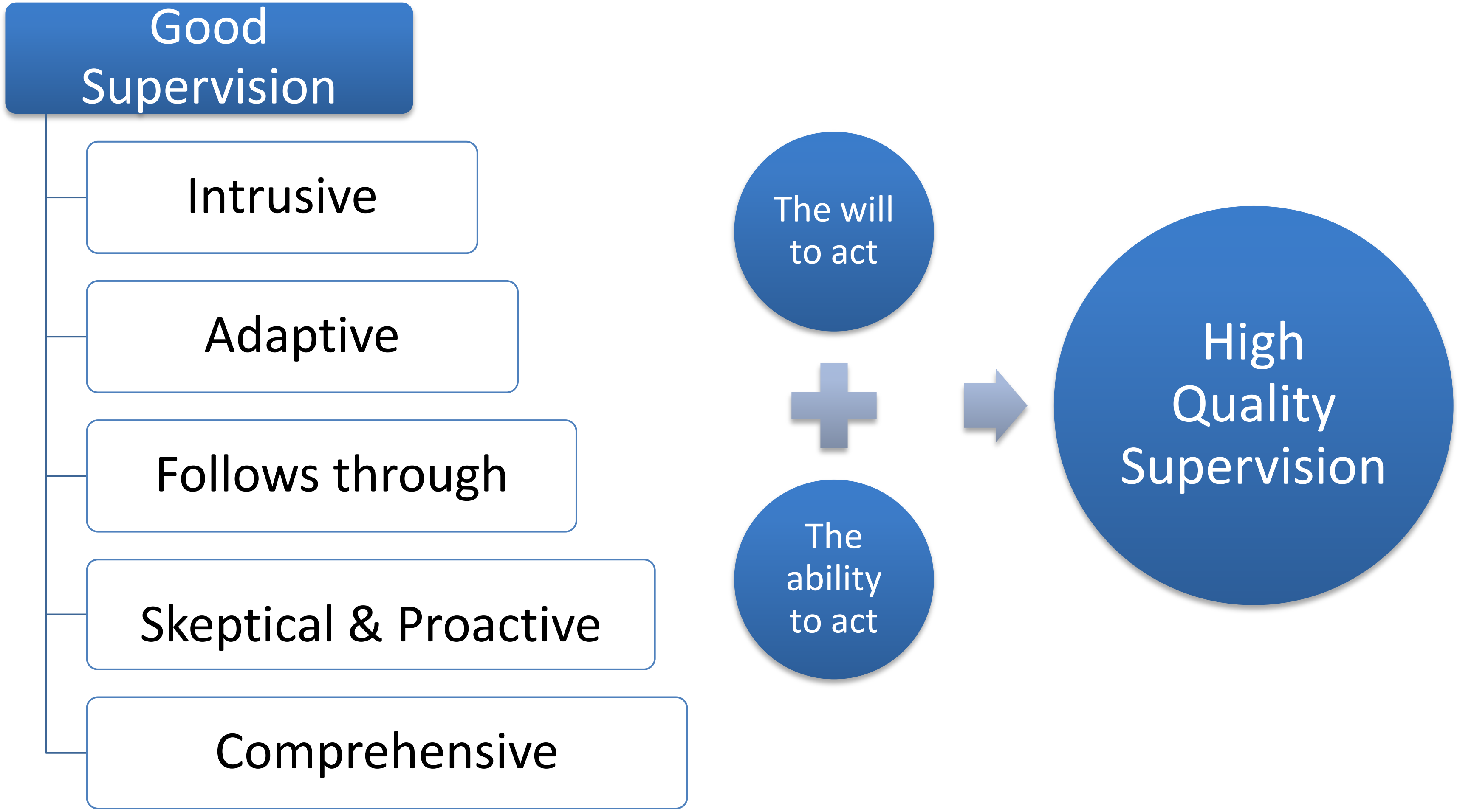

What are the factors influencing 'will' and 'ability' to act ?

Ability to Act

- Authority
- Resources
- Internal Organization
- Strategy
- Interagency Relationships

Will to Act

- Clear Mandate
- Independence
- Accountability
- Staff Expertise
- Appropriate Relationship with Industry

How good are countries in ensuring this “will” and “ability” ?

Effectiveness of supervision is assessed in IMF/World Bank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starting 2000…….

…and our findings show that effective supervision remains a challenge across the membership, particularly regarding the elements of the “will to act”.

Main deficiencies reflected in FSAPs – areas of lowest compliance globally

Banking Supervision	Insurance Supervision	Securities Regulation
Consolidated Supervision	Corporate Governance	Operational Independence and Accountability
Country and Market Risk	Supervisory Authority (Independence, Accountability Resources, Powers, Protection)	Regulatory oversight of SROs
Risk Management Process	Group-wide Supervision	Supervisory Powers, Resources and Capacity
Operational Independence, Accountability and Resources	Risk-assessment and Management	Effective use of inspection, enforcement and compliance

Supervisory will and ability to act remains an issue

Key elements of the supervisory ability and will to act – clear mandate, operational independence, adequate resources, effective powers – are not met with in many countries assessed under the IMF-World Bank FSAP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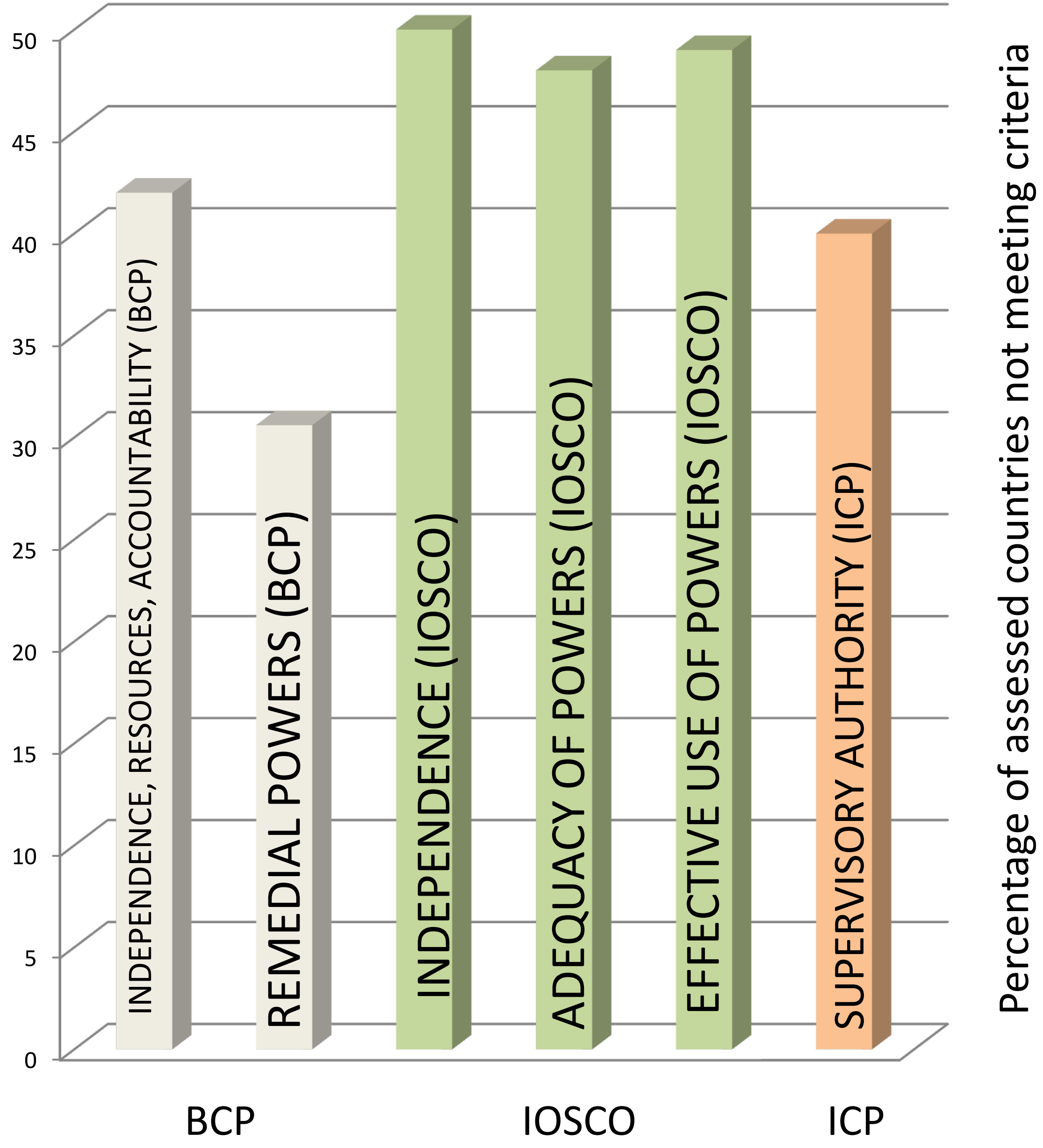

Some observations from IMF assessments

- **On operational independence**,
  - absence or requirements for a fixed term for head of agency or no specified reasons for dismissal or requirement to make public reasons for dismissal;
  - lack of credibility in supervisory actions because powers are not used, or a prominent role for ministers in supervisory decisions either due to legal requirements or established practice;
  - no budgetary independence as activities are funded out of central budget;
  - Limited protection of supervisors from industry and government interference;
  - presence of supervised financial sector participants on agency boards;
  - and in few jurisdictions, the practice of supervisory agencies owning supervised financial institutions or being on their boards

Some observations from IMF assessments

Supervisory capacity and resources - Commonly cited deficiencies:

- lack of experienced supervisors, training budgets
- inability to retain qualified staff due to low salary scales and competition from industry
- Use of supervisory resources not always responsive to risks but may reflect other priorities or mandates

Formal Powers of Supervisors- Commonly cited deficiencies:

- Most have authority to impose sanctions on banks, though sometimes for a very limited range of events.
- Lack of clarity in matching the sanction to the severity of the infringement; leading to inconsistent application and loss of credibility
- In few instances, powers very narrow and would lead to extreme actions for common situations
- In several cases, formal or informal requirements for all/major sanctions and penalties to be approved by the minister, which eroded supervisory credibility

International attention is now turning to supervision

- The G20 leader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this "second pillar" in their Toronto declaration and reiterated this in the Seoul summit

  - *We reaffirmed that the **new financial regulatory framework must be complemented with more effective oversight and supervision**. We agreed that supervisors should have strong and unambiguous mandates, sufficient independence to act, appropriate resources, and a full suite of tools and powers to proactively identify and address risks…*

- In October, the FSB(in consultation with IMF) made recommendations on enhancing supervisory intensity and effectiveness in SIFIs
- Future reviews will focus on assessing issues in supervisory mandate, independence, authority and resour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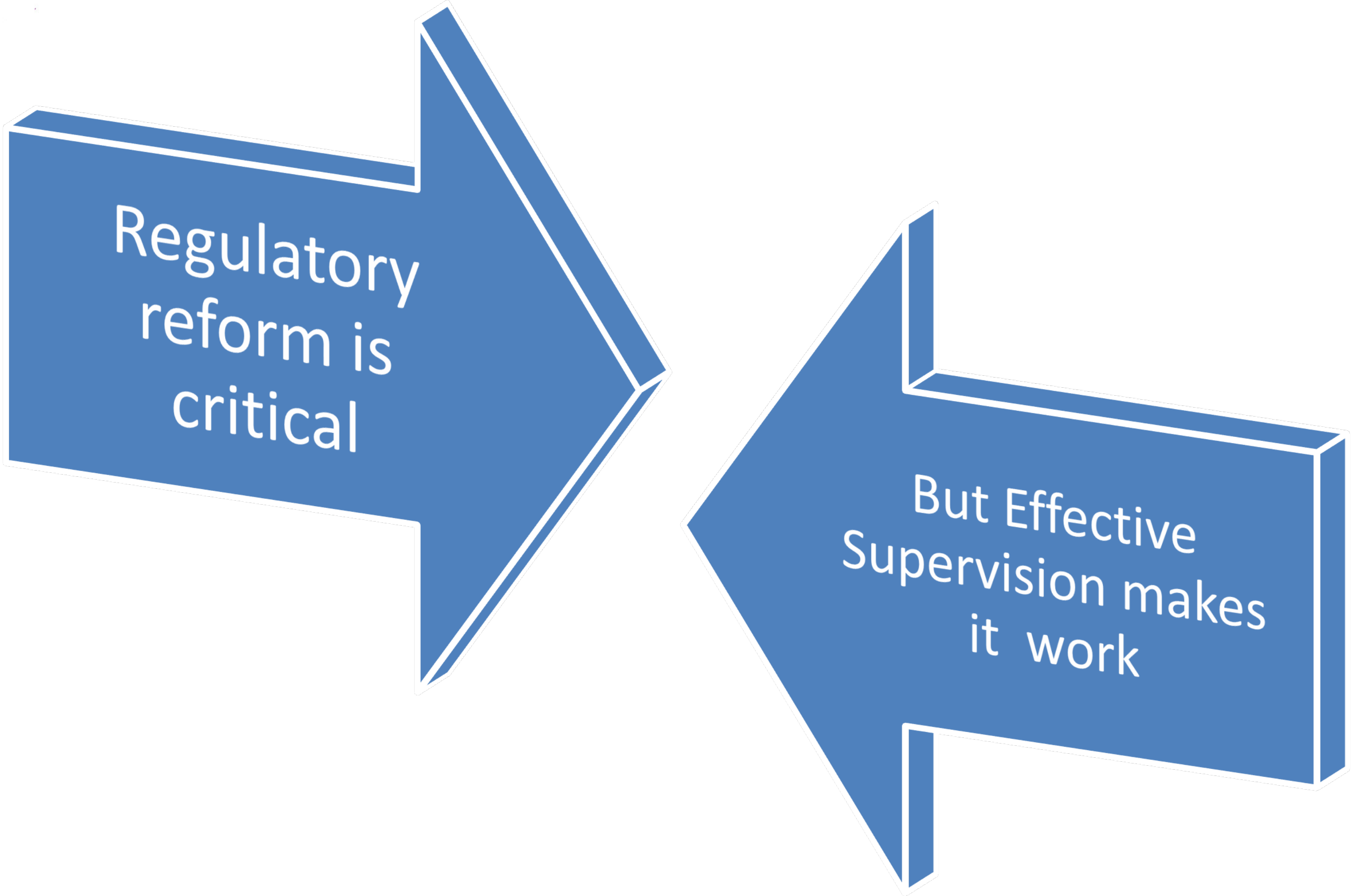
Regulatory reform is critical
But Effective Supervision makes it work

Thank you.

References in this presentation

G20 Communiqués

1.Seoul Summit Leader’s Declaration (Nov 2010)

IMF Staff Position Notes

1. “The making of good supervision-learning to say no ” (May 2010)
2. “Redesigning the contours of the future financial system” (Aug 2010)
3. “Shaping the new financial system”(Oct 2010)

FSB Reports

1. “Intensity and Effectiveness of SIFI Supervision (Nov 2010)”

「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 국내 금융규제환경 변화」
기조발제

G20 이후
국내 금융감독 강화방안

2010.12

금융감독원 거시감독국장 박동순

Ⅰ. 개요

Ⅱ. 주요 논의내용

Ⅲ. G20 이후 금융환경 변화

Ⅳ. 정책방향

I. 개요

- G20 서울 정상회의('10.11.11. ~ 12.)에서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과 함께 거시경제 정책 공조,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
- 글로벌 금융안전망, 금융소외계층 포용 등 금번 서울회의에서 신규 제시된 의제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기반을 마련
-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구축, shadow banking 규제 등은 차기 회의에서 신규 논의가 필요한 의제로 채택

➡ **G20 의제에 대한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G20 서울정상회의 핵심 의제

	논의 내용
합의 의제 (서울에서 합의)	1. 은행 자본 · 유동성 규제 기준 2. SIFI규제 정책권고안 3. 환율 등 거시경제정책 4. IMF 개혁
신규 의제 (서울에서 신규 제기)	1. 글로벌 금융안정망 구축 2. 금융소외계층 포용
차기 의제 (차기에 신규 논의 예정)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구축, 신흥국 관점의 규제개혁. Shadow banking 규제, 금융소비자 보호 등

Ⅰ. 개요

Ⅱ. 주요 논의내용

1. 합의 의제
2. 신규 의제
3. 차기 의제

Ⅲ. G20 이후 금융환경 변화

Ⅳ. 정책방향

1. 합의 의제

가.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 기준 (바젤III 도입)

1) **은행 자본규제 체제 정비**: 규제자본비율 상향, 완충자본 도입 등
2) **규제자본의 손실흡수능력 개선**: 자본인정기준 강화, 조건부자본 도입 검토
3) **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 명목자산 대비 Tier1 비율 규제
4) **유동성비율 규제 도입**: LCR제도 및 NSFR제도 도입

나. SIFI규제 정책권고안

1) **손실흡수능력 강화**: 추가자본부과(capital surcharge) 등
2) **정리역량 강화**: SIFI 부실화시 추가 손실 없이 정리 가능한 제도 마련
3) **감독수준 제고**: SIFI의 주요 리스크에 대한 감독 강화
4) **금융인프라 강화**: 지급결제제도, 장외파생상품시장 개선 등

1. 합의 의제

다. 환율 등 거시경제정책

1) 환율정책 : 신흥국-선진국간 공동노력(경주합의 3대 원칙) 재확인

<경주합의 3대 원칙>
① 경제 펀더멘탈을 잘 반영하도록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전환하고 환율의 유연성 제고
② 경쟁적 평가절하(devaluation)를 자제
③ 준비통화(reserve currency) 발행국가를 포함한 선진국들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에 유의하기로 약속

2) 글로벌 불균형 : 불균형 여부 판단을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 마련 및 G20간 상호평가 하기로 합의

라. IMF 개혁

1) IMF 쿼타 및 지배구조 개혁방안(경주 합의사항) **재확인**

2) IMF의 회원국 감시활동 강화노력 지원

2. 신규 의제

가.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1) IMF 자금지원제도 개선

2) 지역안전망과 IMF의 협력을 확대

나. 금융소외계층 포용

1) 글로벌 파트너쉽 설립

2) 중소기업 자금지원 혁신기금 마련

3. 차기 의제

가.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구축

-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따른 영향 완화 등

나. 신흥국 관점의 규제개혁

- 외환 리스크 관리, 외은지점에 대한 규제·감독 역량 강화 등

다. Shadow banking 규제

- 은행규제 강화에 따른 Shadow banking의 규제차익 행위 방지

라. 금융소비자 보호

- 국제적 기준의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

마. 기타사항 : 상품파생시장 규제안 등

Ⅰ. 개요

Ⅱ. 주요 논의내용

Ⅲ. G20 이후 금융환경 변화

1. 글로벌 금융환경

2. 국내 금융환경

Ⅳ. 정책방향

1. 글로벌 금융환경

가. 거시적 감독의 중요성 부각

- 금융규제 개편안을 승인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고 완전하게 이행하기로 합의
- 또한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구축 등을 향후 G20 중점 논의과제로 제기

➡ **거시건전성 감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전망**

※ 다만, 시스템리스크 규제 관련 구체적 시행방안은 논의가 미진

이에 따라 규제회피(regulatory arbitrage) 등으로 금융규제 개편의 실효성 저하 및 금융시장에 혼란 가능성도 상존

1. 글로벌 금융환경

나. 금융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 대형화, 겸업화 추세를 금융위기 및 대마불사의 한 요인으로 논의하고, 자기자본 규제, SIFI 규제 등에 합의

➡ **대형화, 겸업화 보다는 금융중개 기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금융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예상**

1) SIFI 규제안 마련에 따라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자산확대 경쟁 억제

2) 자기자본 규제 강화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는 반면 예대업무 강화 전망

3) Shadow banking 규제 강화로 레버리지 투자가 억제되고 본연의 중개업무에 치중할 전망

1. 글로벌 금융환경

다. 신흥국의 자본유출입 통제 가속화

- 미국의 양적완화 등으로 증가한 유동성이 신흥국으로 지속 유입 전망

➡ **G20 이후 신흥국들의 외국자본 유출입 통제가 본격화될 전망**

※ 일부 국가들은 이미 자본유입 통제를 실시중

주요국 자본유입 통제 현황

국가명	논의 내용
브라질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에 대해 종전세율(2%)을 6%로 인상(10.18)
태국	외국인이 태국 국채 등에 투자시 이자소득 및 자본소득에 대해 15%의 세금을 부과(10.12일)
중국	금융기관들의 차입규모 쿼터제 철저 준수, 외환유입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핫머니 유입 억제책을 발표(11.9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채 최소 1개월 보유의무 부과, 상업은행의 중앙은행 예치금 금리인하, 신규 발행채권의 만기 장기화 등을 포함한 투기성 단기자금 유입 억제책 발표(6.16일)

2. 국내 금융환경

가.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성 제약

-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G20의 환율운용에 대한 국제적 합의 등

➡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거시경제정책(통화신용, 환율)의 자율적 운용이 더욱 제한**

※ 특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글로벌 유동성 유입이 급증하면서 통화당국의 딜레마가 가중*

*'10.7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2%에서 2.25%로 인상하였음에도 외국인자금이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계속 유입되어 시중금리가 오히려 하락한 사례

2. 국내 금융환경

나. 국내 은행의 외화차입 여건 악화 가능성

- 주요 외화 조달원인 글로벌 SIFI에 대한 규제 시행시

➡ **국내 은행의 외화차입 여건 악화 가능성**

- 자본유출입 통제방안 시행시

➡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금의 일부 유출 가능성**

- 또한 PIIGS 국가의 재정위기 심화시

➡ **유럽계 은행들이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대출금 및 투자금 등을 회수할 가능성**

2. 국내 금융환경

다. 국내 은행의 영업행태 변화

- 새로운 자본 유동성 규제 시행

➡ **국내 은행의 수익성 하락 및 자금조달·운용 행태가 변화할 가능성**

- **수익성** : 자본조달비용 상승 등으로 수익성 저하 예상
- **조달·운용** : 장기 안정자금 조달 확대 및 위험자산 운용 축소
  - 안정적인 예금 수신은 확대
    금융회사간 단기차입, 은행채 발행 등은 축소 전망
  - 중소기업대출 심사요건을 강화하는 등 고위험 대출을 축소할 소지

I. 개요
II. 주요 논의내용
III. G20 이후 금융환경 변화
IV. 정책방향
1. 글로벌 규제개혁안 도입준비 및 국제논의 대응
2. 규제강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3. 금융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감독수단 강구
4. 국내 금융산업의 장기 발전전략 수립

1. 글로벌 규제개혁안 도입준비 및 국제논의 대응

가. 글로벌 규제개혁안 도입 준비

1) 바젤 III : 국내 법규 개정 추진 및 금융회사의 이행준비 유도

- 국내은행은 자본비율이 양호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경우 규제 변화에 따른 급격한 충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 경기대응 완충자본의 적립규모 및 이행속도 등에 있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법규 개정 등을 추진할 필요

2) SIFI규제 : 국내 SIFI에 대한 자체 선정기준 및 규제방안 마련 필요 (G-SIFI 선정기준 및 규제방안 확립 이후)

- 상호연계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향후 국내 SIFI 결정시 반영할 계획

  * '10.10월 회원국중 최초로 실시

1. 글로벌 규제개혁안 도입준비 및 국제논의 대응

<참고> 글로벌 규제개혁안 도입 일정

구분	규제 내용	도입 일정
바젤 III	은행 자본규제 체제 정비	2013~2018년중 이행예정
	규제자본의 손실흡수능력 개선	2014~2017년중 이행 예정
	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	2018.1.1. 이행 예정
	유동성비율 규제 도입	2011~2013 이행상황 모니터링
SIFI 규제	손실흡수능력 강화	2011년말까지 구체적 방안 마련
	정리역량 강화	2011년말까지 국가별로 제도 마련
	감독수준 제고	2011년말까지 이행상황 점검
	금융인프라 강화	2011년말까지 관련 국제기준 개선

1. 글로벌 규제개혁안 도입준비 및 국제논의 대응

나. 국제논의 대응

- **G20 차기 의제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

➡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체제 마련 준비**

G20 차기 의제

	의제	주요 내용
1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구축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따른 영향 완화 등
2	신흥국 관점의 규제개혁	외환 리스크 관리 등
3	Shadow banking 규제	Shadow banking의 규제차익 행위 방지 등
4	금융소비자 보호	국제적 기준의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등
5	기타사항	상품파생시장 규제안 등

2. 규제강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1) 은행권에 대한 글로벌 규제 강화로 권역별 규제 강도 차이 발생 및 형평성 논란 가중

➡ 주요국 현황, 국제논의 동향 등을 참고하여 **권역간 자본규제 차별화 여부 등 종합 검토**

2) Shadow banking 규제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헤지펀드, 부외거래 등을 통한 규제회피 노력 증대

➡ **헤지펀드 활동내용, 부외거래 남용 여부 등을 정밀 점검**
또한 규제회피 가능영역을 사전 검토하여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 규제강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3) 위험자산 축소를 위해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기피 소지

➡ **과도한 여신심사 강화 여부 상시 점검**
서민금융 활성화·건전화 도모

4) 은행 규제 강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새로운 수익원 창출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 가능성

➡ **신규 수익원 창출시 파생상품 등을 통한 위험전가 행위(예: KIKO) 또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

3. 금융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감독수단 강구

1) 쏠림현상 방지

➡ 유관기관과의 협조 하에 시장안정화 조치 적기시행

2) 외국자본 유출입 완화

➡ 현재 추진중인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방안* 이외 추가방안 지속 발굴

*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부활 방안(국채 및 통안채에 투자에 대해 0~14%의 탄력세율 적용)을 국회에서 논의중

3. 금융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감독수단 강구

3) 외화건전성 강화 : 은행·기업별 종합 방안 강구

- **은행** : 외화부채 만기구조 장기화, 외화조달의 지역별·통화별 다양화
- **기업** : 불요불급 외화차입 억제, 외화의존도 완화

4) 시장감독 강화 : 외국인 등에 의한 시장 교란* 대비 제도개선 추진

* '10.11.11, 도이치증권의 옵션연계 대량매도에 따른 주가급락 등

- **다자간·양자간 협약체결을** 확대
- 불공정거래 조사시 외국감독당국과의 **정보교류 원활화**
- **거래관행 개선조치** 강구도 병행

4. 국내 금융산업의 장기 발전전략 수립

감독당국 : 금융산업 & 실물부문의 동반 성장을 목표

- **과잉경쟁 완화 등을 위해 신흥국 등 해외진출 및 해외 영업망 강화 지원**

  - 금융전문인력 양성 선행

  - 비용·편익분석에 근거한 투자를 지도

금융시장 : 안정적 발전기반 모색

- **금융 인프라 정비 및 건전거래 관행 정착**

감사합니다

G-20 금융규제개혁의 주요 내용과 국내은행에 대한 영향

2010. 12. 7

한국금융연구원
KOREA INSTITUTE OF FINANCE

■ 목 차

Ⅰ. 서론

Ⅱ. 건전성 관련 규제환경의 변화와 영향

1. 자본 및 레버리지 규제
2. 유동성규제
3. SIFI 규제
4. 금융규제 범위 확대

Ⅲ. 보상체계 및 회계제도 개선과 영향

1. 보상체계
2. 회계제도

Ⅰ. 서론

서 론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FSB를 중심으로 금융규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음.

1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 2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규제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
3 금융권 분담 강화	캐나다 정상회의 후 논의축소
4 금융규제 범위 확대	각 국가별 상황에 따라 추진되는 추세
5 보상체계 개선	
6 회계제도 개선	

◆ 본고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이 우리나라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려고 함.

Ⅱ. 건전성 관련 규제환경의 변화와 영향

1. 자본 및 레버리지 규제

2. 유동성규제

3. SIFI 규제

4. 금융규제 범위 확대

바젤위원회(BCBS)의 자본규제 합의사항

◆ 2010년 9월 12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은행에 대한 자본 및 유동성 규제 대폭 강화에 합의

자본규제관련 합의사항

- 최소 보통주자본비율 : 현행 2% → 4.5%
- Tier 1 최소자본비율 : 현행 4% → 6%
- 총자본비율 : 현행 8% 유지
- 완충자본 : 보통주자본 2.5% 추가 확보(capital conservation buffer)
    - 미래의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
    - 완충자본은 위기 시 사용 가능하나, 이 경우 자본 비율이 다시 목표수준(2.5%)이상 될 때까지 이익배당 등 제약
- 신용과도팽창 시 감독당국이 은행에 대해 0~2.5%까지 추가 자본 부과(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바젤위원회(BCBS)의 자본규제 합의사항 (계속)

BCBS 자본규제 합의에 따른 새로운 자본규제 비율

	평상시	신용팽창기
보통주자본 비율	7%	9.5%
Tier 1자본 비율	8.5%	11%
총자본 비율	10.5%	13%

바젤위원회(BCBS)의 자본규제 합의사항 (계속)

지난 7월 BCBS 최고위급 회의에서 자본비율 계산 기준 대폭 강화

- 자본 계상 시 영업권이나 이연법인세 자산등을 자본금에서 차감
  - 우리나라는 이러한 항목들을 이미 자본에서 차감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큰 영향은 없음.
- 다만, 모기지서비스권리 (MSR), 시차에 의한 이연법인세, 비연결 타금융회사 투자지분의 경우 보통주자본의 15% 한도까지 인정
- 위험가중자산(RWA) 계상 시 파생상품 거래의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유동화 익스포져, 트레이딩 계정 등에 대한 자본부과를 대폭 강화

강화된 자본비율 규제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보통주자본비율 및 Tier 1 자본비율 : 2013~2015년까지 점진적 상향
- 완충자본 : 2016~2019년까지 매년 0.625%씩 상향, 2019년부터는 2.5% 적립
- 자본 공제항목 : 2014년부터 매년 20%씩 5년에 걸쳐 완전 차감
- 현재 보유 자본 항목 중 새로운 자본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자본금액은 2013년부터 10년간 경과 기간을 인정하되, 인정한도를 매년 10%씩 차감

새로운 자본 규제 이행 일정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최소보통주자본비율			3.5%	4.0%	4.5%	4.5%	4.5%	4.5%	4.5%
자본보전Buffer						0.625%	125%	1875%	250%
필요 보통주자본			3.5%	4.0%	4.5%	5.125%	5.75%	6.375%	7.0%
공제항목 차감				20%	40%	60%	80%	100%	100%
최소 Tier 1 비율			4.5%	5.5%	6.0%	6.0%	6.0%	6.0%	6.0%
최소 총자본비율			8.0%	8.0%	8.0%	8.0%	8.0%	8.0%	8.0%
필요 총자본비율			8.0%	8.0%	8.0%	8.625%	9.25%	9.875%	10.5%
기발행자본			10년간 매년 10%씩 안정대상에서 제외						

자료 : 금감원 보도자료

현재 우리나라 은행들의 자본비율 상황

- ◆ 2010년 6월말 현재 7개 시중은행 BIS 비율
  - ✓ 모든 은행의 BIS비율이 새로운 규제에서 평상시 요구수준인 10.5%를 초과하고 신용 과도 팽창 시 요구 수준인 13%이상임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독 당국의 지도하에 국내은행들이 자본을 많이 확보한 결과인 것으로 보임
  - ✓ 강화된 자본인정 기준으로 계산시 국내은행의 BIS비율이 다소 낮아질 수는 있으나 크게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님
  - ✓ 자본을 무작정 많이 쌓는 것도 수익성에는 좋지 않으므로 적정 수준 유지 필요

2010년 6월말 현재 시중은행 BIS비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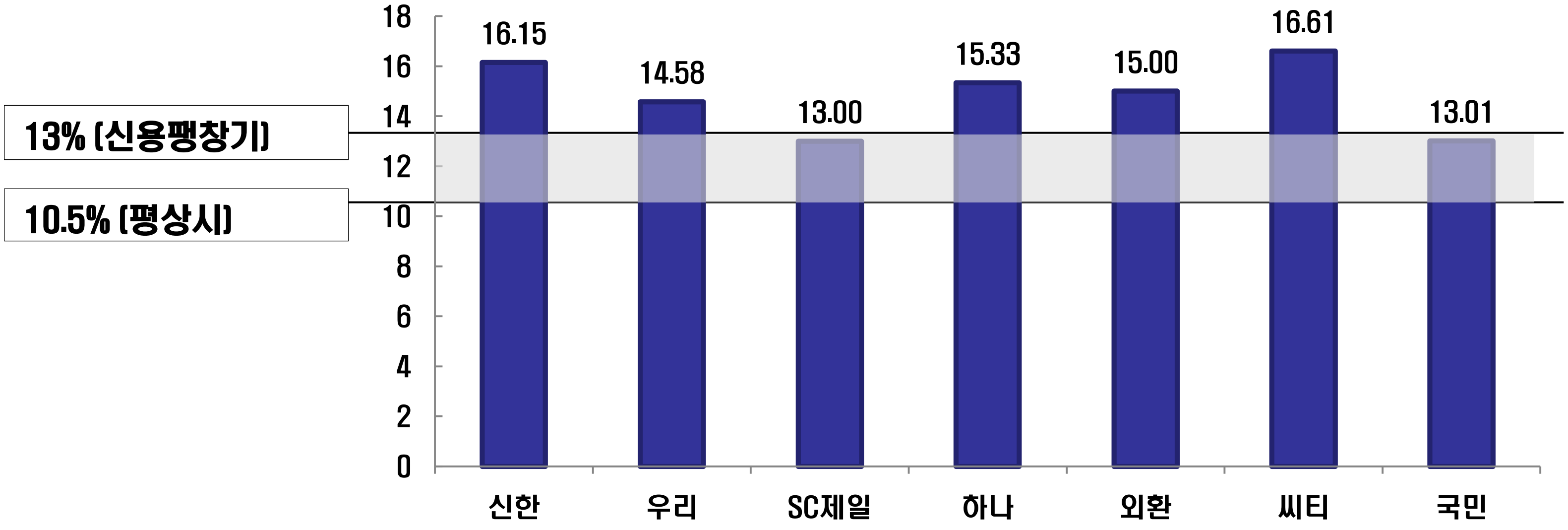

자료 : 각 행 문의

현재 우리나라 은행들의 자본비율 상황(계속)

◆ 2010년 6월말 현재 7개 시중은행 Tier 1 자본비율
- ✓ 모든 은행이 새로운 규제에서 평상시 요구수준인 8.5%를 초과
- ✓ 4개은행은 새로운 규제에서 신용 과도 팽창 시 요구수준인 11%도 초과
- ✓ 새로운 자본 인정 기준 적용시 다소 낮아질 수 있으나 큰 문제는 없어 보임

2010년 6월말 현재 시중은행 Teir1자본비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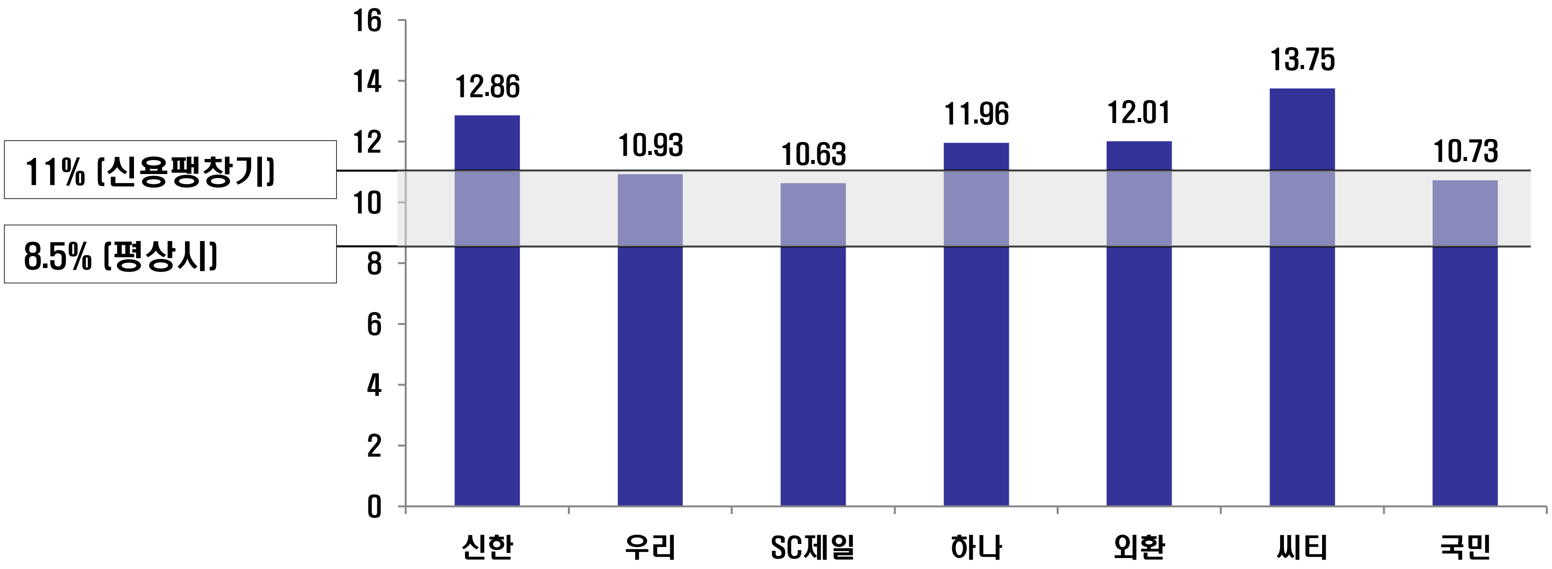

자료 : 각 행 문의

현재 우리나라 은행들의 자본비율 상황(계속)

◆ 2010년 6월말 현재 7개 시중은행 보통주자본 비율
- ✓ [(Tier1자본 – 신종자본증권)/위험가중자산]으로 계산하여 대체적인 상황을 체크
- ✓ 모든 은행이 새로운 규제에서 평상시 요구수준인 7%를 초과
- ✓ 5개 은행은 새로운 규제에서 신용 과도 팽창 시 요구수준인 9.5%를 초과
- ✓ 새로운 자본 인정 기준에서는 다소 낮아질 수 있으나 큰 문제는 없어 보임

2010년 6월말 현재 시중은행 보통주자본 비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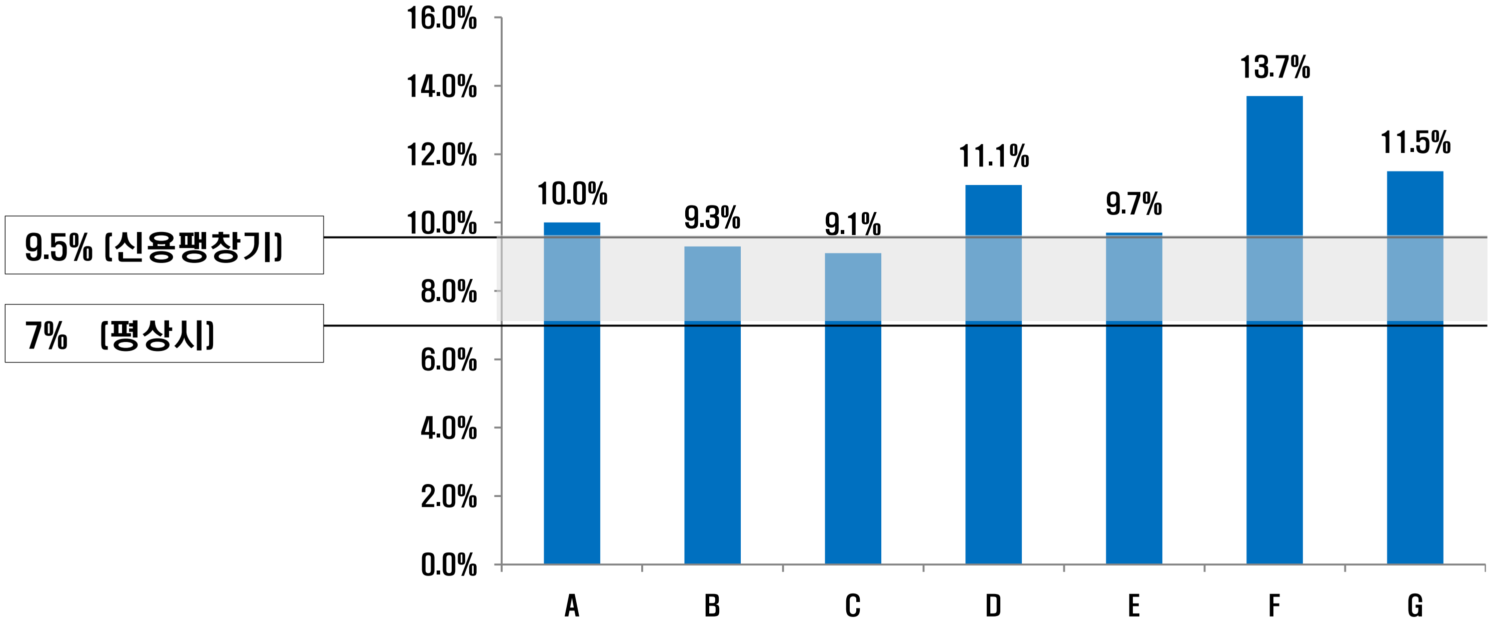

바젤위원회의 레버리지비율 규제 합의사항

레버리지비율 규제 합의 사항
▪ 최저 레버리지비율 : Tier 1 자본 기준 3%
▪ 2013년부터 2017년말까지는 준비기간으로 감독당국이 모니터링
▪ 은행들은 2015년부터 레버리지비율을 공시
▪ 2017년 상반기에 종합 검토를 거쳐 2018년부터 강행 규제로 시행할지 여부 확정

우리나라 은행의 레버리지비율 상황

◆ 2010년 6월말 현재 7개 시중은행 Tier1 기준 레버리지 비율 현황

- ✓ 레버리지비율 ≒ 자본/[연결재무제표 기준 총자산+(부외거래총계-부외거래중 파생상품거래)]로 계산하여 대체적인 현황 파악
- ✓ 모든 은행이 새로운 규제에서 요구수준인 3%를 초과(레버리지 비율 요건 충족)

2010년 6월말 현재 시중은행 (역)레버리지비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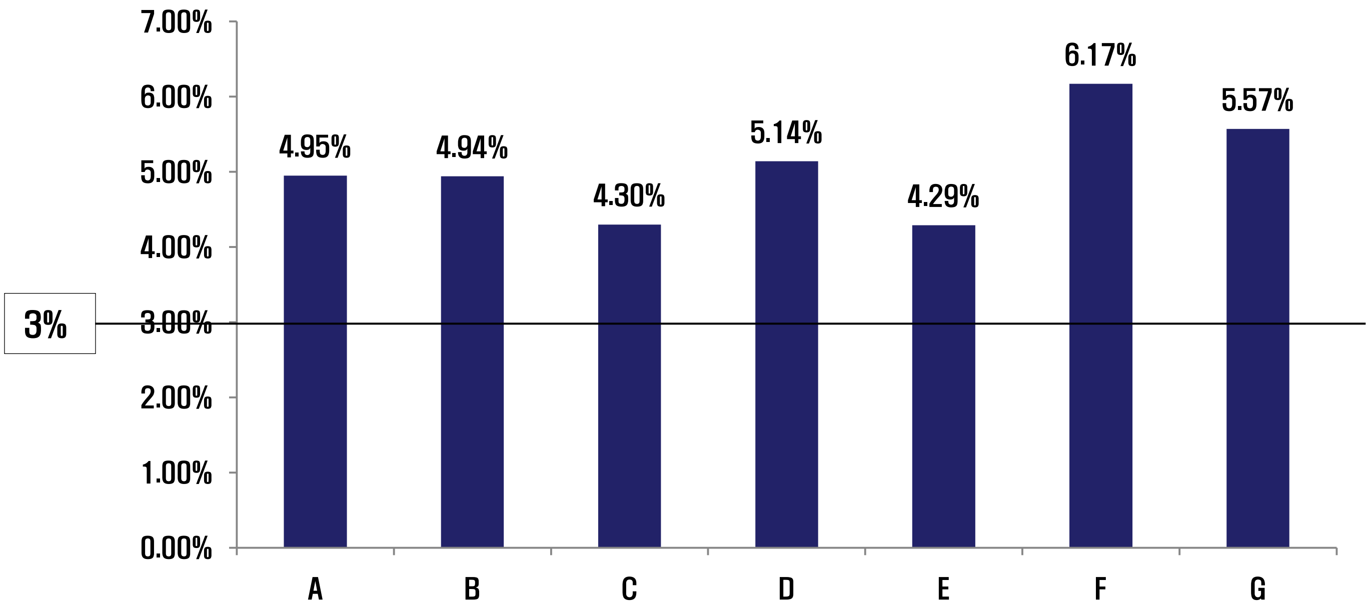

자본비율 및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국내은행에 대한 영향

단기적으로는 직접적 영향이 거의 없을 전망

- 현재 모든 시중은행이 평상시 기준 바젤Ⅲ 자본규제비율 및 레버리지비율을 준수하고 있는 상황
- 이행시기도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부실여신 지속, 은행합병 등 발생 시 자본 감소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장기적으로는 은행수익성 하락, 자산포트폴리오 변경 등 발생 가능

- 자본 코스트 상승으로 수익성 저하
- 은행의 자산성장위주 전략 제한
- 위험가중자산(RWA) 계상 시 자본부과가 대폭 강화되는 트레이딩 거래, 자산유동화, 파생상품거래 등 위축 전망
- 고위험 대출인 중소기업대출 등 위축 가능성

Ⅱ. 건전성 관련 규제환경의 변화와 대응

1. 자본 및 레버리지 규제

2. 유동성규제

3. SIFI 규제

4. 금융규제 범위 확대

현재까지의 유동성 규제 논의 내용

- 은행들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단기 유동성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 : LCR) 및 중장기 유동성 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 : NSFR) 규제를 도입

  * 단기 유동성비율(LCR) = 고유동성자산 / 순현금유출 $\geq$ 100%

  * 중장기 유동성 비율(NSFR) = 안정적 자금조달 가용액(ASF)/안정적 자금조달 필요액(RSF) $\geq$ 100%

단기 유동성 비율(LCR) 규제

목적

- 시장 전체에 대한 중대한 위기 상황 발생시 은행이 30일 동안 순현금유출에 자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의 고유동성 자산을 보유토록 하기 위함.

이행시기

- 2014년까지 관찰기간(observation period) 운영
- 2015년부터 규제 이행

정의

LCR = 고유동성자산 / 순현금유출

LCR 의 측정: 고유동성자산 /순현금유출

고유동성자산(Stock of high quality liquid assets)

위기 시에도 큰 제약없이 처분에 따른 가치 손실이 작으며 쉽게 현금화 가능한 자산

고유동성 자산의 범위

Level 1

- 현금
- 중앙은행 지준(스트레스 상황시 유출될 수 있는 수준)
- 위험 가중치가 0%인 국가, 중앙은행, 공공기관, BIS, IMF, 유럽위원회 또는 다국적 개발은행이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채권 등

Level 2 : 15% haircut 적용, 고유동성 자산의 40%까지만 이용 가능

- 위험 가중치가 20%인 정부 또는 공공기관 자산
- AA- 등급 이상인 회사채, 커버드 본드

LCR 의 측정: 고유동성자산 /순현금유출 (계속)

순현금유출 (Net cash outflows over 30-days) : 현금유출- 현금유입

- 위기 상황에서 예상되는 부채의 이탈규모(run-off)와 자산에서 현금으로 유입되는 규모의 차액
- 스트레스 상황하에서 순 유동성 불일치(mismatch) 포지션을 측정

① 현금유출

- 예금이탈액, RP만기 연장 실패에 따른 현금 유출액, 신용 및 유동성 공여 약정에서 발생하는 현금유출액 등에 각각의 자금 이탈율(run-off rate)을 곱하여 산출

② 현금유입

- 국가별 처리방법 차이로 인한 쟁점이 존재
- 초안에서는 소매성(개인) 및 도매성 계약상 현금 수취, 비유동자산담보 역Repo · 증권대차 계약 등에 100% 수취율 설정

중장기 유동성 비율(NSFR) 규제

목적

- 1년 기준 중장기 유동성 비율을 측정
- 은행의 중장기 안정적 자금조달을 유도, LCR을 보완

이행시기

- 항목별 비율 등에 대한 조정 논의가 아직 진행중
- 2017년까지 관찰기간(observation period) 운영
- 2018년부터 규제이행

정의

NSFR = 안정적 자금조달 가용액(ASF)/안정적 자금조달 필요액(RSF)

NSFR의 측정: 안정적자금조달가용액/안정적자금조달필요액

안정적 자금조달 가용액 (ASF, Available Stable Funding)

- 부채 및 자본 항목
- 각 항목에 따라 ASF Factor(가중치)를 차별화하여 산출

<표> ASF 항목 및 Factor 예시

	조건	ASF Factor	
		초안	수정 고려
자본 (Tier 1과 Tier 2)		100%	
만기 1년 이상 우선주 및 기타 부채		100%	
만기가 없거나 잔존 만기 1년 이하 소매 · 중소기업 예금, 시장성 수신	안정적 비안정적	85% 70%	90% 80%
만기가 없거나 잔존 만기 1년 이하 비금융회사 예금, 무보증시장성 수신		50%	

NSFR의 측정: 안정적자금조달가용액/안정적자금조달필요액 (계속)

안정적 자금조달 필요액 (RSF, Required Stable Funding) :

- 자산 항목
- 각 항목에 따라 RSF Factor(가중치)를 차별화하여 산출

〈표〉 RSF 항목 및 Factor 예시

	조건	RSF Factor	
		초안	수정 고려
현금, 잔존만기 1년 이하 증권, 금융기관 대출		0%	
잔존만기 1년 이상 국가, 중앙은행, 국제기구 등이 발행 · 보증하는 증권	담보로 제공되지 않음	5%	
만기 1년 이상, AA 이상 회사채 또는 커버드 본드		20%	
만기 1년 이상, AA-에서 A-사이 주식, 잔존만기 1년 이하 비금융회사 대출, 금(Gold)		50%	
만기 1년 이하 소매 대출		85%	
모기지 대출		100%	65%
난외 항목 익스포저		10%	5%

국내은행의 유동성 비율 현황: 유동성자산 비율 및 예대율로 LCR 및 NSFR 추론

- ◆ 유동성 규제의 영향
  - 최근 IMF 등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유동성 규제의 영향은 유럽국가 등에 비해 비교적 작을 것으로 전망됨.

- ◆ LCR 및 NSFR은 데이터 부족 등으로 직접 측정이 어려워 본고에서는 유사지표로 국내은행의 단기 · 장기 유동성 상황 추론
  - 국내은행의 LCR 상황 추론 : 총자산 대비 유동성자산 비율, 예금 및 단기자금 조달 대비 유동성자산 비율을 분석하여 추론
  - 국내은행의 NSFR 상황 추론 : 예대율 및 시장성수신 비중 분석하여 추론

총자산대비 고유동성자산(국채+현금) 비율

Liquid Assets to Total Assets

- 고유동성자산인 현금 및 국채 (Cash plus Government securities) 계정의 합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 (IMF, 2010)
- LCR은 분모의 순현금유출 대비 현금 ·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을 파악
- 2009년 말 국내은행의 총자산 대비 고유동성자산 비율은 2008년에 비해 상승하여 LCR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추정되나, 2006~2007년에 비해서는 평균적으로 낮아졌음.

시중은행의 총자산 대비 고유동성자산(현금+국채) 비율 (단위 : %)

	2006	2007	2008	2009
A	7.1	6.6	6.0	6.3
B	4.7	3.8	4.0	6.9
C	3.9	3.3	3.8	4.5
D	4.7	3.8	4.0	7.1
E	5.1	3.1	2.9	3.5
F	10.9	7.6	4.1	7.5
G	4.2	3.2	2.6	2.4

주: 은행계정 기준
자료: 금감원, 금융통계시스템 및 은행경영통계

예금 및 단기자금조달 대비 유동성자산 비율

Liquid Assets to Deposits & Short-term Funding

- 예금과 단기로 조달된 자금이 갑자기 이탈하는 경우 유지가능한 유동성 지표(Bankscope에서 제시)로서 역시 부채의 이탈에 대한 유동성 지표인 LCR과 유사
  - * 여기서 유동성 자산은 단기매매 증권, 은행 대출, 현금 및 예치금 등을 포함
- 시중 은행 중 일부 은행에서만 동 비율이 2009년에 상승하였고, 4대은행 중 한곳만이 2007년에 비해 상승

시중은행의 Liquid Assets / Dep & ST Funding (단위 : %)

	2006	2007	2008	2009
A	9.88	10.81	9.19	9.37
B	13.08	12.85	12.59	12.43
C	11.58	14.48	14.79	15.80
D	10.26	12.29	11.93	10.32
E	13.37	13.93	13.23	14.70
F	7.72	6.14	19.07	14.21
G	19.43	22.28	26.13	19.17

자료: Bankscope

예대율 및 시장성수신 비중

- 예대율은 예수부채 대비 대출자산의 비율로서 NSFR과 밀접한 역상관관계를 가질 가능성
- 2010년 상반기 현재 대부분 은행의 예대율이 전년에 비해 하락하고 있어 NSFR에 긍정적인 효과 기대
- 다만 NSFR은 예금 · 대출의 만기별 · 유형별로 가중치가 차별화되어 있으며, NSFR 분자의 안정적자금조달 가용액에는 자본 및 만기1년 이상 우선주 및 부채가 추가되므로 예대율과 차이가 있음.

시중은행 예대율(총대출[1]/총예금[2]) (단위 : %)

	2006	2007	2008	2009	2010. 상반기
국민은행	110.3	126.8	135.2	122.4	107.0
신한은행	130.0	141.6	133.5	108.1	101.4
우리은행	125.6	134.6	125.7	111.5	105.4
하나은행	99.3	108.6	111.7	112.7	112.1
SC제일	112.5	142.6	103.9	112.1	102.8
한국씨티	113.5	144.2	121.5	95.0	89.7
한국외환	107.0	115.9	109.8	110.7	92.4

주: 1) 총대출=원화대출금+외화대출금+내국수입유산스+지급보증대지급금
2) 총예금=원화예수금+외화예수금
3) 은행계정 기준
자료: 금감원, 금융통계시스템 및 은행경영통계

시중은행의 총수신 대비 시장성수신 비율 (단위 : %)

	2006	2007	2008	2009	2010. 상반기
국민은행	25.8	32.5	35.0	30.6	21.1
신한은행	35.4	36.7	32.7	20.8	16.3
우리은행	30.0	32.9	28.5	22.2	18.9
하나은행	21.5	23.8	25.0	23.5	22.2
SC제일	34.4	41.0	28.5	28.9	24.5
한국씨티	32.4	40.3	34.4	30.4	25.4
한국외환	23.6	27.3	27.6	26.3	14.2

주: 1) 시장성수신=CD+RP매도+은행채(원화+외화)
2) 총수신=원화예수금+외화예수금+CD+RP매도+은행채(원화+외화)
3) 은행계정 기준
자료: 금감원, 금융통계시스템

우리나라 은행의 유동성 현황

- 우리나라 은행의 단기유동성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소 회복하였으나 위기 이전 수준으로까지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 은행의 중장기 유동성비율은 감독 당국의 예대율 규제 예고 등으로 인해 최근 들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임.

- 외화 유동성 규제에 대한 논의 병행 필요
  - 우리나라 은행들의 경우 원화유동성 보다는 외화유동성 리스크가 훨씬 큰 만큼 국제적인 유동성 규제 강화와는 별도로 국내에서는 외화유동성 규제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향후 전망

은행들의 예금확보 경쟁 증가

- LCR 및 NSFR 규제는 은행들의 예금확보 경쟁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
- 특히 국내 예대율 규제와 함께 예금확보 경쟁을 심화시킬 가능성

자금조달 비용의 상승

- 소매성 예금은 빨리 증가하기 어려워 한동안 도매성 자금조달(wholesale funding)에 의존할 수 있어 자금조달 비용 증가
- 예금 확보 경쟁 ⇒ 수신금리 상승 ⇒ 조달비용 상승
- 해외 장기 자금조달 시장의 경쟁 격화로 국내은행들의 해외 장기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질 가능성

향후 전망 (계속)

자산 및 부채 포트폴리오의 변화

- 수신금리의 상승 ⇒ 여신금리 상승 ⇒ 대출 감소 가능성
- 현금유입인정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매 및 중소기업대출의 축소, 국공채 및 우량 회사채 선호 증가
- 특히, NSFR 규제로 민간 부문(개인 및 기업)에 대한 단기적인 신용 제공이 위축될 가능성

수익성 하락

- 자금조달 비용 상승이 대출 스프레드의 충분한 증가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수익성 하락 가능성
- LCR 충족을 위해 수익성이 낮더라도 유동성이 높은 자산의 보유 비율 증가로 수익성 하락

* Barclays는 유동성 규제 도입 및 이로 인한 자금조달 변화로 유럽은행들의 ROE가 1.5%p 하락할 것으로 전망

향후 전망 (계속)

전통적 은행업무를 벗어난 영업행위의 위축

- 위험도가 높은 장외파생상품, 단기 소매매출 및 특정 트레이딩 자산의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전통적인 은행업무 이외의 영업행위가 위축될 가능성

금융그룹의 그룹내 국가간 유동성 이동 및 운용에 제한

- LCR로 인해 국내 금융그룹의 영업범위 국제화 진행시 그룹내 초과 유동성의 국경간 이동 및 운용이 위축될 수 있음.

비용 상승을 상쇄시키기 위한 은행들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 필요

Ⅱ. 건전성 관련 규제환경의 변화와 대응

1. 자본 및 레버리지 규제

2. 유동성규제

3. SIFI 규제

4. 금융규제 범위 확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SIFI) 규제강화

SIFI 식별

- Domestic SIFI는 각국 감독당국이, Global-SIFI(G-SIFI)는 FSB가 지정
- G-SIFI 식별방법으로 BCBS의 MPG(Macroprudential Supervision Group)가 개발중인 시스템적 중요도 측정법 활용
  - 「지표기준법」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도」 측정결과로 개별기관을 몇 개 구간(buckets)으로 나누고 구간별 정책수단 강도를 차별하는 구간법(bucketing approach) 채택 가능성
  - BCBS가 2010년말까지 G-SIFI 식별기준 개발 완료 예정
- 회원국간 평가협의회(PRC)가 주기적으로 점검

SIFI 감독강화

- FSB는 「SIFI 감독 강화 및 효과성 제고 권고안」 (SIFI Supervisory Intensity and Effectiveness Recommendations)을 금년말까지 마련 예정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SIFI 규제강화(계속)

정리제도 강화

- 대형 다국적 금융그룹 부실화 시 본국과 진출국간 정리절차 합의 부재로 이들을 원활히 정리하기 어려웠음.
- FSB와 BCBS는 개별 회사 비상정리 계획 강화방안 및 국가간 정리체계(cross-border resolutions)개선 방안을 금년 중 마련 계획

SIFI에 대한 추가 규제

- SIFI는 규모와 상호연계성이 커 파산시 시스템리스크를 발생 시키는 등 부정적 외부성(negative externality)이 있으므로 이의 내부화를 위해 보다 엄격한 건전성규제 필요
- 추가규제 논의 내용(회원국간 이견)
  - 추가자본 부과(capital surcharge) ⇒ 시스템적 중요도에 비례하여 완충자본(capital buffer)상향 조정
  - 추가 유동성 규제(liquidity surcharge) ⇒ 시스템적 중요도에 비례하여 LCR 상향조정
- 특정 상대방 및 그룹에 대한 exposure 제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SIFI 규제강화 (계속)

금융시장 인프라 강화

- SIFI 부도 시 시스템 리스크 최소화 및 시스템안정성 유지를 위해 중앙 청산소 및 거래 등기소를 설립하는 등 금융시장 인프라를 강화

국제공조 강화

- SIFI 규제관련 재량권
  - SIFI 규제와 관련해서는 각국이 자국상황을 감안하여 추진 할 수 있도록 일정부분 재량 부여
  - 국제적 일관성은 확보
  - FSB가 Policy sets를 설정하고 각국이 상황에 맞게 선택
- BCBS는 각국별 SIFI 규제가 적절한지 점검하기 위해 PRC(Peer Review Council) 설립을 제안

SIFI 규제의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

국내은행이 G-SIFI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음.

- BCBS에서 회원국의 약 105개 은행을 6개 그룹으로 구간을 나누어본(Bucketing)결과 우리나라 은행은 모두 bucket 6에 포함 되어 G-SIFI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음.
- MPG co-chairs는 G-SIFI 숫자가 50개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2010.10.7~8, 8th MPG meeting) 하였는 바, 2009년 현재 국내은행 중 글로벌 총자산 규모 순위가 가장 높은 우리금융이 79위(2010 「The Banker」)로 국내은행이 G-SIFI에 포함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

Domestic SIFI 규제수준은 다소 완화할 필요

- Domestic SIFI의 경우 각국이 재량을 가지고 선정·규제하되 BCBS등에서 기준 등에 대해 점검
- 이미 바젤Ⅲ로 은행규제는 강화
- 국내 은행들은 세계 수준에 비해 규모가 작아 추가적인 강력한 규제시 향후 선진국 은행 수준으로 성장에 제약
- 규모가 큰 은행에 대해 감독당국의 감독 및 모니터링은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과도한 규제는 바람직 하지 않음

글로벌 SIFI에 대한 규제 강화 시 국내 은행의 외화차입여건 악화 우려

Ⅱ. 건전성 관련 규제환경의 변화와 대응

1. 자본 및 레버리지 규제

2. 유동성규제

3. SIFI 규제

4. 금융규제 범위 확대

금융규제 범위의 확대

중앙청산소 및 거래정보저장소 설립 등 장외파생상품 감독 강화

- 미국 금융개혁법에서는 은행의 장외파생상품 거래 금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헤지 목적 또는 금리 등의 자산을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거래를 행하는 부보금융기관은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기존 예금은행 파생상품 업무에는 큰 영향 없을 것으로 예상
- 국내 은행들의 기존 파생상품업무에도 영향 없을 것으로 예상

신용평가사에 대한 의존도 경감

- FSB : 은행.펀드매니저 등이 외부 신평사 평가 의존을 지양하고 자체적인 신용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

헤지펀드 감독 강화

- G20은 헤지펀드와 관련해 등록 의무화, 투자관련 자료 공개, 헤지펀드 업계의 Best Practice 마련 등 규제 강화 공조에 합의

Ⅲ. 보상체계 및 회계제도 개선과 대응

1. 보상체계

2. 회계제도

현재까지의 논의 내용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 경영진의 과도한 위험추구를 유도하는 단기성과 위주 보상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짐.

FSB (금융안정위원회)	G20	BCBS (바젤은행감독위원회)
▪ 건전한 보상원칙(Principles for Sound Compensation Practices, 2009.4.) ▪ 보상원칙의 이행기준 (Implementation Standards, 2009.9.)을 마련	▪ FSB 보상원칙을 승인하고 각국의 금융회사들이 이를 이행하도록 요청	▪ 각국의 세부적인 보상체계 개선안 마련을 보완 ▪ 보상원칙과 기준 평가 방법 (Compensation Principles and Standards Assessment Methodology, 2010.1.) ▪ 리스크와 성과의 보수 연계 방식 (Range of Methodologies for Risk and Performance Alignment of Remuneration, 2010.10.)을 제시

FSB 보상원칙은 보상의 리스크 연계 및 공시강화를 강조

주요 내용	
효과적인 지배구조 구축	▪ 중요 금융회사의 경우 독립적인 보상위원회 구성 ▪ 리스크 및 준법감시 담당부서의 보상을 영업분야와 독립적으로 결정
리스크를 감안한 보상체계 구축	▪ 금융회사의 재무성과가 낮은 경우 총변동보상 규모를 축소 ▪ 고위급 경영진과 특정직원에 대한 보수 이연지급 ▪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 지급 비율 의무화
보상체계에 대한 공시 강화	▪ 보상에 대한 연차보고서 공개 – 보상정책 결정 절차, 보상시스템의 주요 설계특성, 보상총계 및 상위 경영진과 직원들에 대한 세부 정보 등
감독당국의 보상체계 감독 강화	▪ 금융회사 안정・구제 등을 위한 정부의 특별조치가 있을 경우 감독당국은 동 금융회사의 보상체계에 대해 개입 가능 ▪ 보상정책이 건전한 자본유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감독당국은 변동보상을 총순수익의 일정비율로 제한 ▪ 보상원칙 미이행 금융회사에 대해 감독당국 즉시시정 조치

국내 보상체계 모범규준 제정 (2010.1)

- 올해 초 FSB의 보상원칙 이행기준을 반영한 업권별(은행,증권,보험,금융지주회사) 보상원칙 모범규준 마련

적용대상 금융회사

FSB 원칙	국내 모범규준
중요한 금융회사 (significant financial institutions)	자산총액 등을 기준으로 적용 금융회사 선정 은행 : 국내은행(18개 모두 적용)

적용대상 임직원

FSB 원칙	국내 모범규준
'경영진 및 금융기관의 리스크 익스포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원'	FSB 원칙을 그대로 반영, 리스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원의 범위는 업권별로 구체화 은행: 투자금융, 외환딜링, 유가증권 운용, 파생상품의 설계 · 판매 · 딜링 등

국내 보상체계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

① 보상위원회의 설치

- 보상체계 설계 및 운영 등을 위한 이사회내 보상위원회 설치
  - 보상위원회는 과반수 이상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제고
  - 보상체계 설계시 리스크 관리 측면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리스크위원회 위원 1인 이상 참여 의무화

② 리스크관리 부서 등의 독립성 강화

- 리스크 관리 담당 부서에 대한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
- 독립적인 보수체계 및 성과평가 방안 마련

③ 보상과 리스크 연계

- 경영진 및 특정직원에 대한 보상 중 상당부분을 변동보상(성과연동보상)으로 지급
- 변동보상 중 상당부분(예:40 ~ 60%)을 이연지급(3년이상)
- 변동보상 중 상당부분(예:50%이상)은 주식.주식연계상품 등 금융회사의 장기성과와 연동되는 형태로 지급
- 이연지급 기간중 성과가 목표에 미달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미래 지급할 변동보상을 축소하여 지급 (malus or clawback arrangement)

④ 보상 관련 공시 강화

보상위원회는 보상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산후 3개월 이내에 공시

향후 전망 및 과제

- 모범규준 제정에 따른 보상위원회의 의무적 설치, 공시강화 등이 시행되면 국내 금융회사의 보수체계 산정에 대한 투명성이 증대될 전망
  - 시장 및 주주의 감시기능 강화

- 그러나 현재 국내 보수체계 개선안은 업권별 모범규준으로서, 법령 등의 형태로 반영된 미국 (금융개혁법), 유럽은행감독위원회의 보수체계 개선안 및 영국 FSA의 보수체계 개선안 등에 비해 강제성이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모범규준을 반영한 구체적인 금융회사별 시행안 마련시 다음을 고려할 필요
  - BCBS의 가이드라인 등을 추가적으로 반영
  - 변동보상과 보상 이연율 · 기간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며, 비례성 (proportionality)을 반영하여 임직원의 중요성 및 업무에 따라 명확하게 차별화
  - 성과 및 리스크를 반영한 보수의 사전적 · 사후적 조정을 위한 성과지표와 리스크 측정 지표의 명확한 설정 및 보완
  - 주식 및 주식연계상품 등의 장기적인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지급 수단의 실효성 검토 및 보완 등

- 각 금융회사별 시행안은 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
  - 구체적인 보수체계 산정 기준 및 중요 임직원에 대한 자세한 보수 내역을 공시할 필요

Ⅲ. 보상체계 및 회계제도 개선과 대응

1. 보상체계

2. 회계제도

현재까지의 논의 내용

- "국제적으로 통일된 고품질의 회계기준 제정" 이라는 목표와 G20의 권고하에 국제적인 회계기준 합치를 이루기 위한 노력 진행중
- 현재까지는 IFRS (국제회계기준)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으며 추후 마련될 단일 회계기준에서 도출될 사항이 추가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
- IASB (국제회계기준위원회)와 FASB(미국회계기준위원회)는 2011년말까지 IFRS와 US-GAPP를 통합한 단일 회계기준 도출 예정
- G20은 최근 회계기준 제정 절차에 있어서 신흥국 참여 확대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를 촉구

국내 현황

IFRS(국제회계기준) 도입

▪ 국내은행은 2011년부터 1월1일부터 K-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적용 (2009년 12월 개정 은행업감독규정)

IFRS (국제회계기준)의 주요 특징

① 원칙중심(Principle-based) 회계기준으로 전환

- 규정(Rule-based) 중심 처리에서 원칙중심 기준으로 전환하여 회계처리에 대한 선택권이 허용됨

② 연결재무제표 중심 공시체제

- 개별재무제표 중심에서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전환하고, 연결대상 종속기업수는 증가, 비재무항목 연결기준 공시

③ 공정가치(Fair Value)평가 확대

- 자산 · 부채의 평가방법을 원가법에서 시가 등에 의한 공정가치 평가 방식으로 전환

④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회계 처리

- 법률 · 감독정책적 목적보다 경제적 실질에 의거한 회계처리로 전환

  예) 대손충당금의 처리: 발생손실기준에 따라 적립

  * 단,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현행과 유사한 수준의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유지 등을 위해 대손준비금 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향후 전망

IFRS의 도입

① 원칙중심 회계기준	기업 회계처리 방식의 자율성 확대 회계 처리상 불확실성 증대 기업간 재무정보의 일관성 저하
② 공정가치(Fair Value) 평가 확대	공정가치평가 능력 제고 필요성 (공시작성 부담 증가) 손익 및 자본규모의 변동성 증대 가능성
③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회계 처리	대손충당금의 경우 적립의무 감소로 자본증가 가능성

향후 단일 회계기준 도출 및 도입

새로이 도출될 단일 회계기준이 국제회계기준(IFRS)과 유의한 격차를 가질 경우 IFRS를 도입한 국내은행들의 새로운 회계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 재발생이 불가피

자본시장 부문의 규제환경 변화와 향후 정책 방향

2010. 12. 7

신 보 성

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목 차

I. 글로벌 자본시장 규제 방향

II. 우리나라의 향후 정책방향

III. 우리나라 금융투자업 발전방향

글로벌 자본시장 규제방향

규제방향 1
시스템리스크 차단

- 자본시장 중개기관에 의한 시스템리스크 유발
- 장외파생상품 등에 의한 시스템리스크 증폭

규제방향 2
금융의 중개기능 회복

- 실물부문 대비 금융부문의 비대칭적 팽창
- Excess Finance

규제방향 3
투자자 보호

- 금융기관에 의한 투자자 권익 훼손
- 금융기관 위주의 감독자원 배분에 대한 반성

시스템리스크 차단 (1): 자본시장 중개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

Shadow Banking 규제 강화

- 2011년 중반까지 FSB에서 규제방안 마련
- 투자은행 등 Non-Bank에 의한 시스템리스크 차단

Dodd-Frank Act의 Non-Bank SIFI 규제

- 자본적립 및 레버리지 규제 강화
- 단기부채에 대한 제약 부과
- Prop trading, Private Equity, Hedge Fund 관련 자본적립요구 강화 및 한도설정
- Resolution Plan 작성의무 부과
  - Plan의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FRB와 FDIC는 보다 강화된 건전성규제를 부과하거나, 자산처분 혹은 분할을 명령할 수 있음
- 규모 제한
  - 투자은행 등에 대해서도 TBTF 문제를 사전 방지

시스템리스크 차단 (2): 장외파생상품 규제 강화

- 2009년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핵심 규제방안에 합의
  - 동 내용은 Dodd-Frank Act 와 EU규제안에 반영
- Mandatory Clearing
  - 적격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중앙 청산소(CCP: Central Counterparty)를 통한 청산을 의무화
  - CCP를 통한 청산의무 불이행시 추가 자본 적립과 증거금 적립을 요구
  - 장외파생상품이 시스템리스크의 핵심고리로 작용할 개연성 축소
- Reporting Transaction Data
  - 장외파생상품 거래내역을 정보저장소(Swap Data Repository)에 보고
  - 장외파생상품 관련 정보 부재로 규제당국의 위기방지 및 위기대응 능력이 취약해지는 문제 완화

시스템리스크 차단 (3): 사모펀드 규제 강화

- 사모펀드 관련 정보에 대한 규제당국의 접근성 확보
  - 전체 사모펀드 혹은 개별 사모펀드가 다른 금융기관 혹은 전체 금융시스템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규제당국이 파악

- Dodd-Frank Act
  - 사모펀드에 대한 등록의무 부과
    - 투자자문업자는 물론, 개별 펀드에 대해서도 등록의무 부과
  - Record Keeping & Reporting
    - AUM, Leverage, Counterparty Exposure, Trading and Investment Position, 기준가 산정 방식, 보유자산의 유형,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대한 정보

- EU: 헤지펀드 규제안에 최종 합의(2010.10)
  - 미국보다 한층 강화된 규제 부과
  - 헤지펀드 매니저의 성과보수 규제, 차입제한 규제, 공시규제 등

금융의 중개기능 회복

- 중개기능과 거리가 있는 일부 자본시장 업무에 제약 부과
  - 해당 업무의 직접적 금지 혹은 자본적립요구 강화

- The Volcker Rule (2010)
  - 은행 및 은행계열사의 prop trading 금지 및 private equity, hedge fund 투자 제한
    - 대고객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
    - 금융기관의 중개기능 회복을 강조
  - Non-Bank SIFI의 prop trading, private equity, hedge fund 업무에 대해 추가 자본적립 및 한도 설정

-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규제안(2010.9)
  - 트레이딩 계정에 대한 자본적립 요구 강화

투자자 보호 강화

■ G20의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추진

- FSB, OECD가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 2011년 G20 프랑스 정상회의에서 보고 예정

■ Dodd-Frank Act

- IAC(Investor Advisory Committee) 설치
- OIA(Office of Investor Advocate) 신설을 통해 옴부즈만 제도 운영
  - Mortgage, Credit Card 소비자에 대한 보호는 FRB 산하의 CFPB(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가 담당
- 소매고객을 대상으로 사실상 금융자문행위를 영위하는 broker-dealer에게도 자문업자(investment advisor)와 동일한 fiduciary duty를 부과하는 방안 검토
  - 금융상품 판매업자에 대한 책임 강화

목 차

I. 글로벌 자본시장 규제 방향

II. 우리나라의 향후 정책방향

III. 우리나라 금융투자업 발전방향

향후 정책방향: 시스템리스크 차단?

- 우리나라 금융투자회사는 시스템리스크를 논할 단계가 아님
  - 국내 대형 증권사의 자기자본은 노무라의 1/8, 맥쿼리의 1/4 수준
  - 중국 최대 증권사인 中信證券의 자기자본도 국내 대형 증권사의 5배

- 레버리지 역시 극히 낮은 수준
  - 증권산업 평균 부채비율은 431%, 대형 5사의 부채비율도 480%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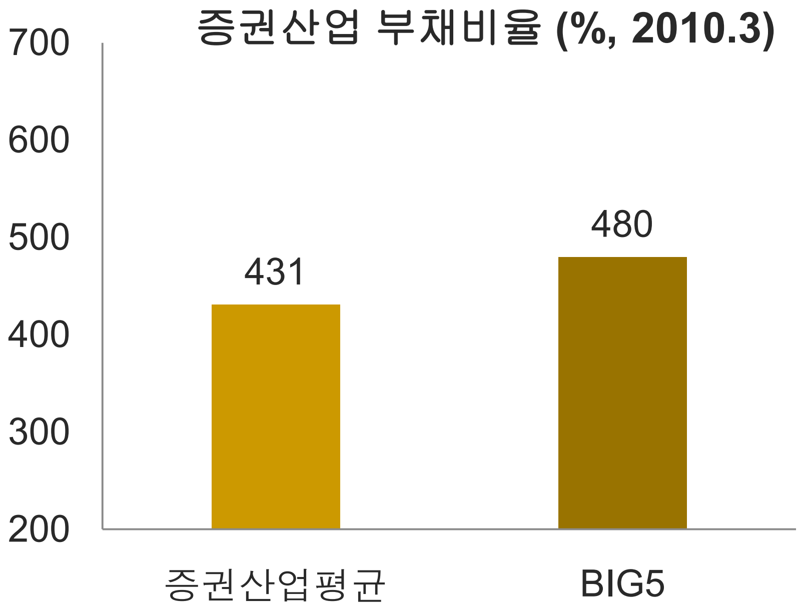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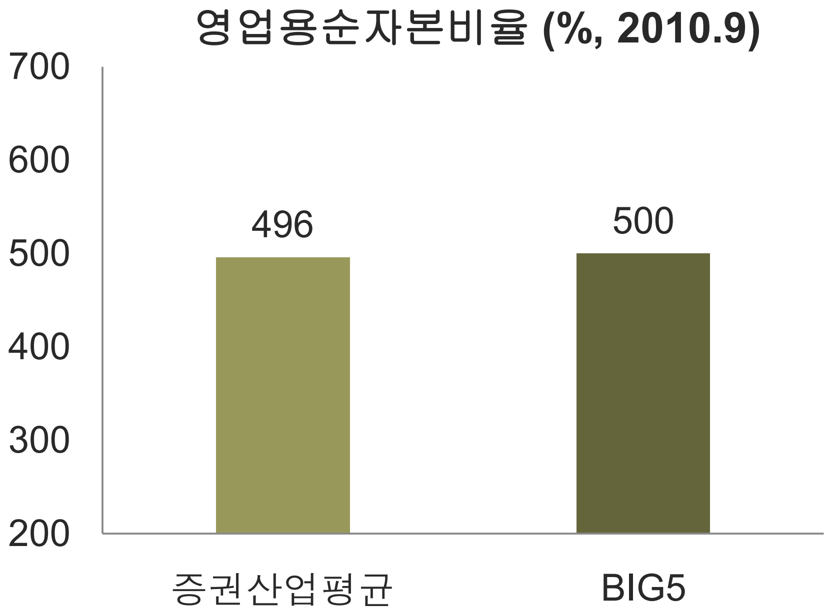

Source: FSS

향후 정책방향: 장외파생상품 및 사모펀드 규제 강화?

CCP설치

- 신용위험의 집중화를 통해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 축소
- 단, CCP이용이 의무화될 경우 수수료, 증거금 등의 비용부담 추가 발생
  - 특히 위험노출액이 큰 통화파생상품의 경우 상당한 비용부담 야기 가능
  - CCP 대상 장외파생상품의 범위 확대는 시차를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사모펀드 규제강화 여부

-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4월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헤지펀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 그러나 운용 상의 과도한 제약 등으로 헤지펀드는 전혀 활성화 되고 있지 못함
  - 사모펀드에 대한 규율체계를 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할 필요
- 우리나라는 헤지펀드의 부작용이 아닌 활성화를 논할 시점
  - 단, 향후 제도개편시 일부 대형 헤지펀드에 의한 시장교란, 과도한 레버리지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야기 문제 등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보고의무 포함)를 강구할 필요

향후 정책방향: 중개기능 회복 및 투자자 보호 강화?

금융의 중개기능 회복

-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prop trading 규모는 극히 미미
  - 금융투자회사의 자본력 부족으로 공격적인 트레이딩 자체가 불가능
  - 현재 market making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 단, 일부 파생상품시장 등의 건전화 필요성 존재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투자자보호 규제 강화 필요

- 금융기관에 속한 판매인력들은 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를 비롯한 광범위한 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근거를 마련할 필요
- 금융자문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영업행위 규제 및 책임 부과
  - 법적 근거 마련은 금융자문업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
    - 제조업자가 아닌 소비자 중심의 금융상품 자문 산업 발달

목 차

I. 글로벌 자본시장 규제 방향

II. 우리나라의 향후 정책방향

III. 우리나라 금융투자업 발전방향

금융투자업 발전방향: Risk Capital 공급기능 제고

■ 자본시장은 국가경제 활력과 밀접히 관련

- ○ 자본시장의 Risk Capital 공급→ 신생기업의 진입 촉진, 대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단축, 경제력 집중 완화
  - – 성장기회 발굴을 통해 신생기업의 설립 및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
  - – 다양한 구조조정 수단을 통해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유도
- ○ Risk Capital 공급기능 제고를 위해 대형 금융투자회사의 출현이 필요
  - – 소수의 대형사와 다수의 중소형사의 공존체제가 바람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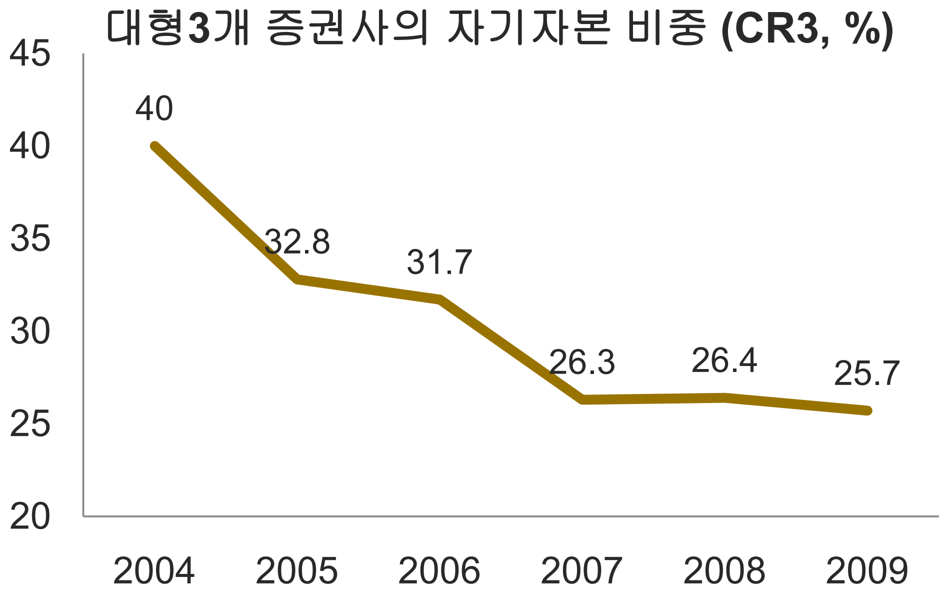

KCMI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금융투자업 발전방향: 적극적인 해외진출

-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자본시장 규모 급성장
  - 중국이나 홍콩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필요
    - 홍콩시장 시가총액의 46.2%를 중국기업이 차지 (2010. 10 기준)
- 해외 투자자 네트워크 부재로 국내 대기업 관련 딜 소화 불가능
  - 국내 기업의 해외채권 발행시장 전부를 해외 IB에 내주고 있는 실정

중국 IPO 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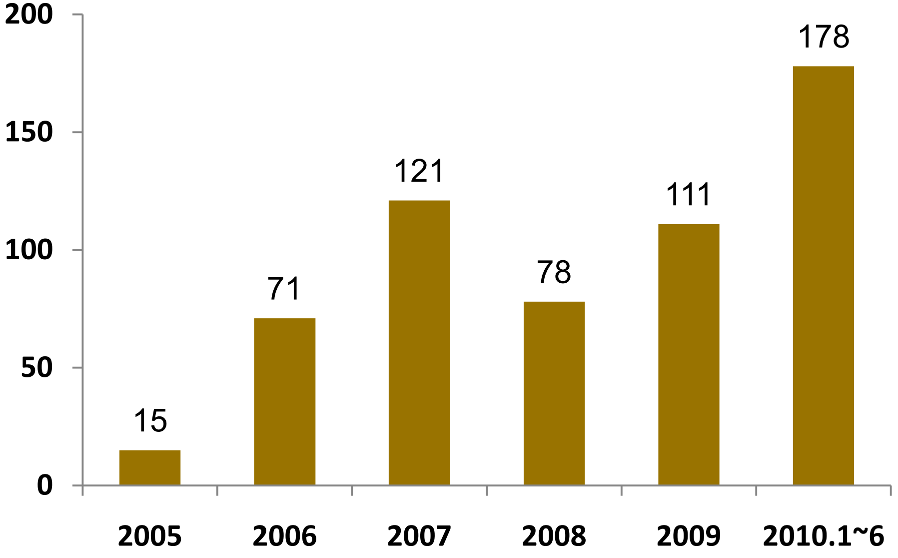

Source: Wind

국내 IB Deal League Table (2010상반기)

순위	IPO	해외채권 발행
1	한국투자증권	Deutsche Bank
2	신한금융투자	BoA Merrill Lynch
3	대우증권	BNP Paribas
4	Goldman Sachs	RBS
5	Morgan Stanley	Citi Group

Source: Bloomberg

END OF DOC

G20 금융규제 개혁과 보험산업의 대응

2010. 12.7

이태열

보험연구원

차　　례

I. 검토배경

II. 서울 G20 정상회의 금융규제 개혁 내용

III. 보험관련 규제의 국제 논의

IV.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I. 검토배경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BCBS와 FSB가 제안한
금융규제 방안에 합의

합의된 금융규제 개혁 내용이 주로 은행의 자본 및 유동성 규제 및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유사한 규제가 향후 보험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 IAIS가 규제개혁 방안을 준비중

AIG그룹이 전통 보험영역이 아닌 투자회사와 신용파생상품 등 규제 사각지대에서 위기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관련 위험에 대한 규제 필요성 검토

본 보고서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금융규제 개혁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보험업 규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II. 서울 G20 정상회의 금융규제 개혁 내용

1. 새로운 은행자기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가. 최소자기자본비율 강화(바젤 III)

	바젤 II	바젤 III		
		최소요구 자본비율	고정완충 자본비율	경기완충 자본비율
보통주 자본비율	2%	4.5%	2.5%	0~2.5%
기본(Tier I) 자본비율	4%	6%	2.5%	
총자본비율	8%	8%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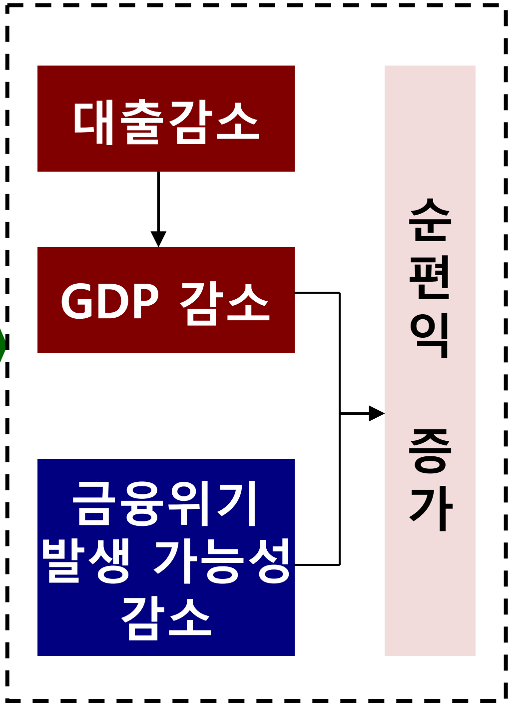

나. 자본의 질 강화

- 영업권 및 기타 무형자산
- 이연법인세
- 비연결 금융회사 투자지분
- 자기주식

위기시 실질적 자본가치 없음 → 보통주 자본 불인정

- 무형자산중 모기지서비스 권리
- 이연법인세중 회계/세무 기준 차이에 의한 이연법인세
- 투자지분중 중요 투자지분

위기시 실질적 자본가치 하락 → 보통주 자본 15% 범위내 자본 인정

→ BIS 비율은 높으나 손실을 흡수하지 못해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방지

다. 리스크 포괄 범위 확대

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축소 위해 자본요구량 증대
재유동화증권	위험가중치 상향
	부외거래수단에 대한 자본요구량 증대
트레이딩계정의 단기투자상품	위기시 가격변동성을 반영한 Stressed VaR 부과

→ 위기상황을 반영하여 자본을 계산

리스크 관리 기준 강화

라. 레버리지비율 도입

레버리지비율 도입

$$\frac{\text{기본(Tier 1)자본}}{\text{명목총자산}} \geq 3\%$$

- 금융시스템의 과도한 신용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
- 위험에 기초한 자기자본규제의 보완수단
- 명목총자산은 위험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음

마. 유동성비율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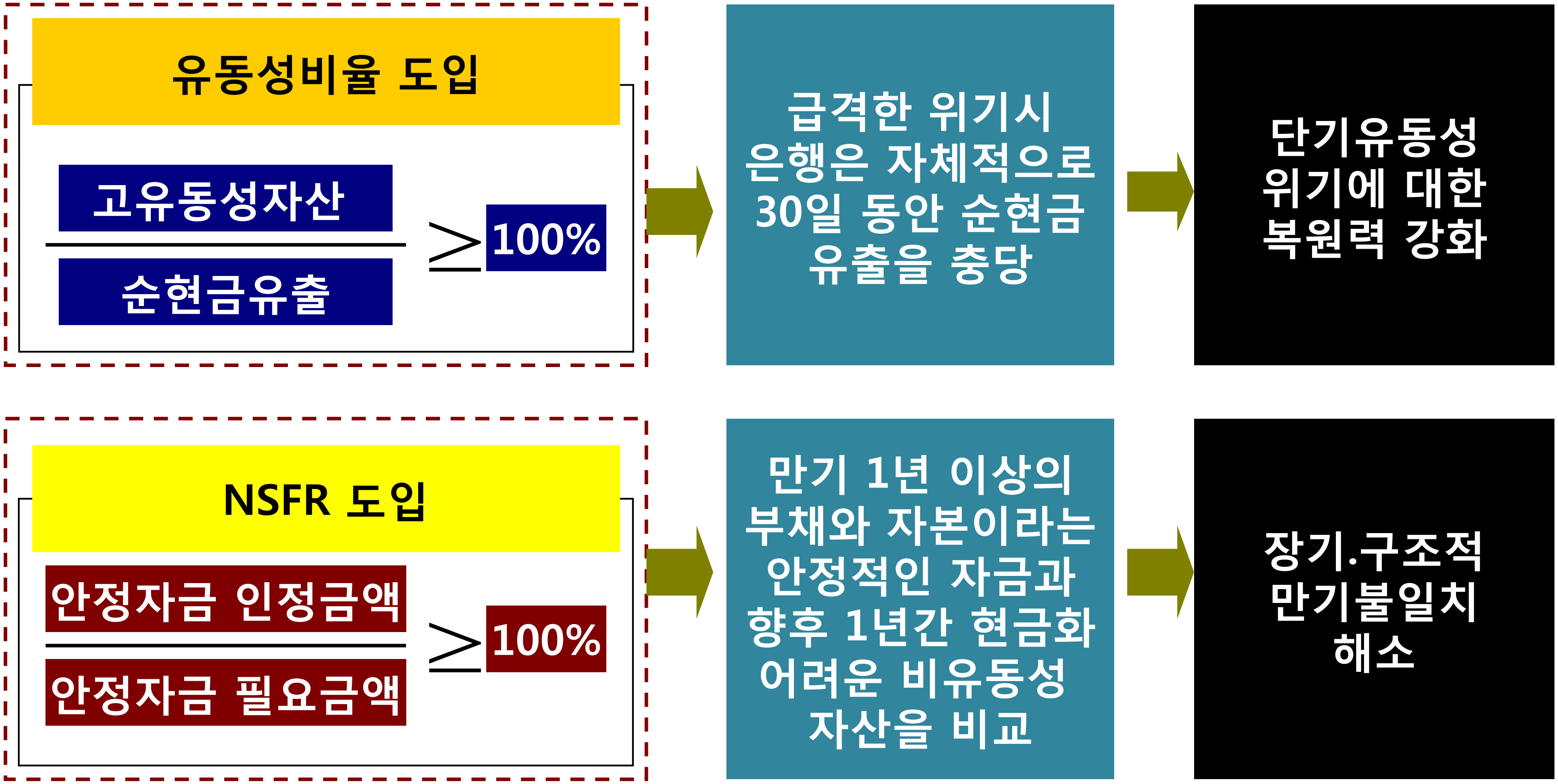
유동성비율 도입
고유동성자산
순현금유출
≥ 100%
급격한 위기시 은행은 자체적으로 30일 동안 순현금 유출을 충당
단기유동성 위기에 대한 복원력 강화
NSFR 도입
안정자금 인정금액
안정자금 필요금액
≥ 100%
만기 1년 이상의 부채와 자본이라는 안정적인 자금과 향후 1년간 현금화 어려운 비유동성 자산을 비교
장기.구조적 만기불일치 해소

2.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규제

SIFI 규제

정책체계	글로벌 SIFI, 국내 SIFI 분류 등	
정리절차	효율적인 정리역량 확보	
이행일정	2011년 중반 글로벌 SIFI 지정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2012년 글로벌 SIFI 정책에 대한 상호 평가 실시	
	2011년 추가자본 부과, 조건부자본 활용, 채권자 구제제도, 감독.검사 강화 등 손실흡수력 강화수단 마련	

→ SIFI 위험이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험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

3. 기타 합의 내용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중앙 청산 및 거래정보 보고	중앙청산소를 통하지 않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관리 도입
외부신용평가등급에 대한 의존도 축소	자체 신용평가를 활용
국제회계기준 합치	IASB와 FASB 2011년까지 회계기준 합치에 노력
FSB에 대한 비회원국 확대 참여	비회원국도 참여하는 지역협의 그룹을 설립

III. 보험관련 규제의 국제 논의

1. 보험업과 은행 감독의 일관성/차별성

보험

은행

금융업간 장벽 완화로 방카슈랑스, 퇴직연금,
보험과 은행간의 접점 확대

보험과 은행의 상호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강화할 체제 구축

2. 바젤 II, III와 solvency II의 유사점과 차이점

바젤 II

- Pillar 1 (최소자본기준)
- Pillar 2 (모니터링)
- Pillar 3 (시장 공시)

바젤 III

- 최소자본기준 강화
- 유동성비율 규제
- 레버리지비율 규제

Solvency II

- Pillar 1 (최소자본기준)
- RBC와 유사
- Pillar 2 (모니터링)
- Pillar 3 (시장 공시)
- 자본구성 강화
- 기본자본 위주의 자본구성을 요구

차이점

- 보통주자본 vs 기본자본
- 경기완충자본 vs 동 규제 없음
- 유동성비율 및 레버리지비율 규제 vs 동 규제 없음

3. SIFI 관련 IAIS 논의

IAIS는 FSB의 SIFI 선정기준과 관련해서 보험부문의 연관성은 지협적이고 전염속도가 느려 시스템 위험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SIFI 선정기준

은행 (FSB)
- 규모
- 상호 연계성
- 대체 가능성

보험 (IAIS)
- 대수의 법칙
- 재보험으로 재보험회사와 원수보험회사간 연계성 증가
- 위험 재배분
- 대재해보험 특정부문에 대한 인수 가능성이 낮을 경우 경제에 불안정 유발
- 시간 개념

Ⅳ. 보험업권에 대한 시사점

1. 보험회사의 리스크 특징

가. 자금조달 및 자산구조

유럽 은행 및 보험회사의 자금조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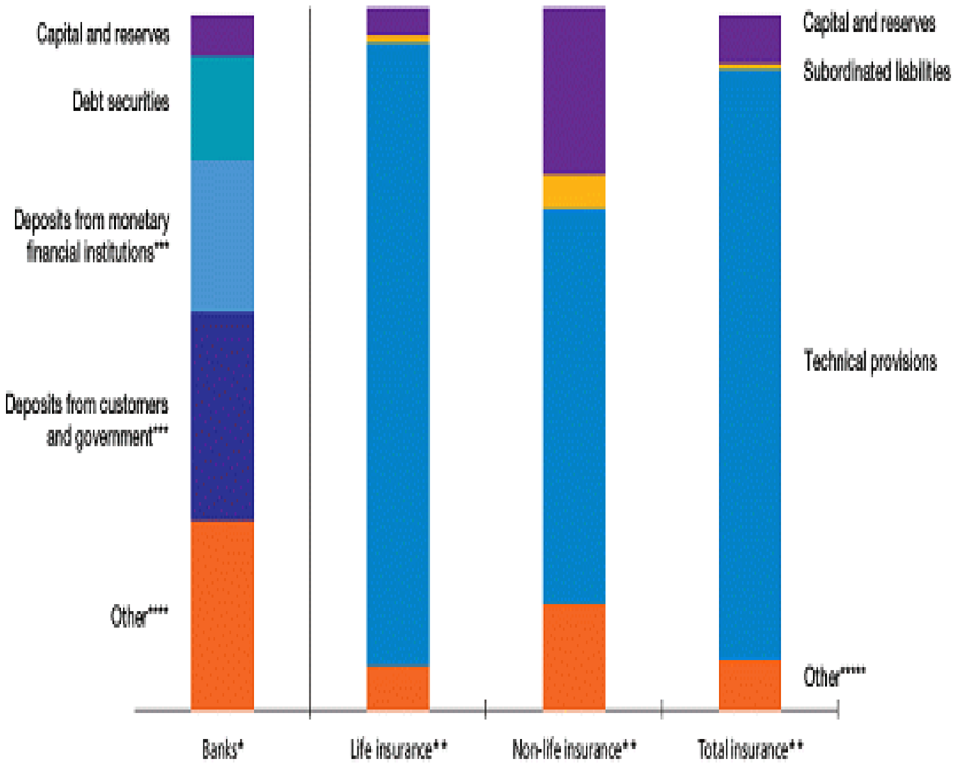

자료: ECB

유럽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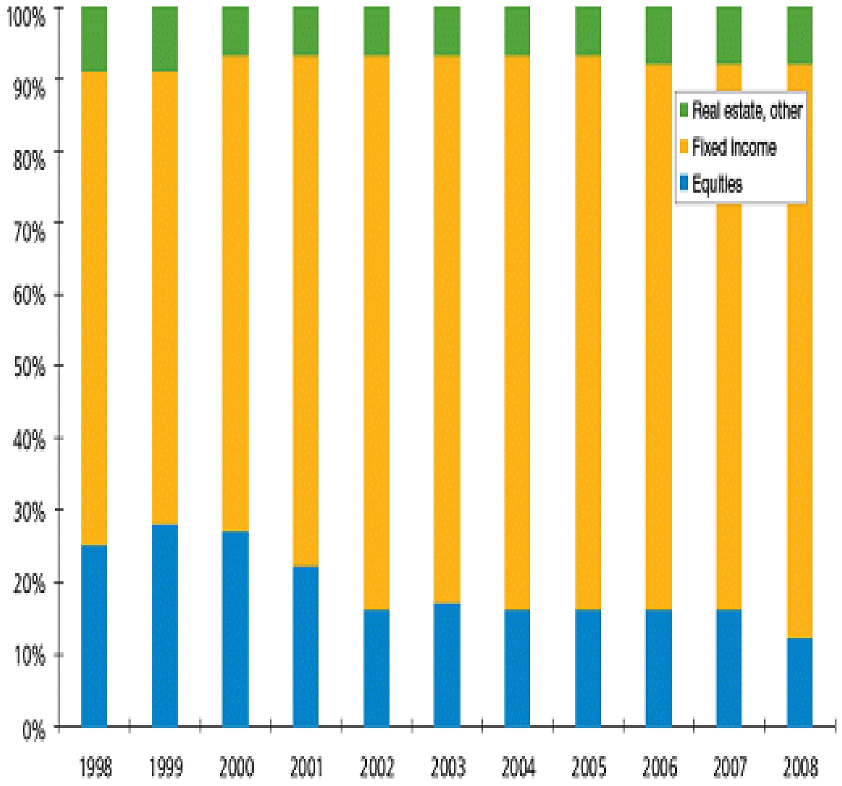

나. 유동성, 시스템 위험 비교

구분	특성	위험
은행	조달 대비 장기 운용 현금 유출입이 경기변동과 밀접 금융기관관 상호연계성 높음	유동성 위험 시스템 위험
보험	조달 대비 단기 운용 보험금 지급 경기변동과 관련 적음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 약함	유동성 위험 적음 시스템 위험 미약

반면, 보험산업도 저축성 보험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은행의 규제 변화 논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2. 보험업에 대한 시사점

가. 금융규제 개혁 적극 대응

자본의 질 개선	- 보통주 위주의 자본 구성 요구 - Solvency II 등 관련 논의에 주목 - 상장을 통한 자본 보완도 적극 고려
동일한 위험에 대한 규제 변화에 대비	- 파생상품, 재유동화 증권 등 자산 운용 측면에서의 요구 자본 증가는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 - 장기 자산 운용 여건의 악화 우려
보험산업 내 리스크 대비	- 신용 보증, 재보험 등 일반 보험과 특성이 다른 경우 유동성 및 시스템 리스크를 신중히 검토

나. 보험의 특징 고려

리스크의 차이	- 유동성비율, 경기완충자본 관련 논의 시 보험산업의 자산과 부채의 만기구조, 경기 변동에 따른 자금유출입 등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고려할 필요
SIFI 지정	-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등 선정 기준 검토시 보험의 시스템위험을 정확히 판단할 필요
중복성 규제	- RBC의 보험리스크 항목에서 사실상 총부채를 반영 따라서 레버리지 규제의 중복성 여부 검토

감사합니다